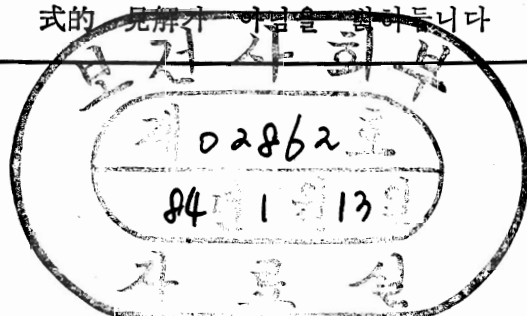


障 碍 者 福 祉 모 델 에 關 한 研 究

1979 年 度

研究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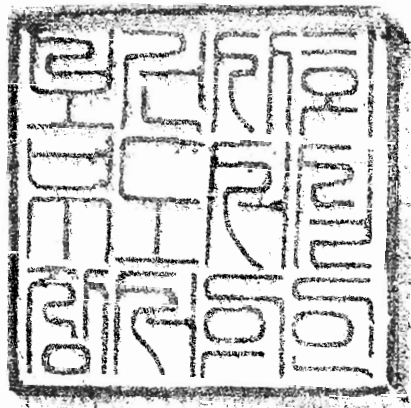
이 資料는 社會保障 審議委員會
研究委員 및 參事의 個別的인
研究結果이며 保健社會부의 公
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드립니다



社 會 保 障 審 議 委 員 會

參 事 韓 惠 東

00087



目 次

第 I 章	序說：研究의 概要	7
第 1 節	研究 目的 및 必要性	9
第 2 節	研究 方法	10
第 3 節	研究 日程	11
第 II 章	障礙者의 類型別 特性	13
第 III 章	障礙者의 出現狀況 및 趨勢	37
第 IV 章	再活에 關한 理論 및 實際	47
第 V 章	障礙者 福祉法의 制定方向	127
第 VI 章	障礙者 福祉體制 研究	147
第 VII 章	結論 및 建議	161

< 表 目 次 >

<表 1> 心身障碍者 分類表	16
<表 2> 肢體障碍者中 肢體切断當時의 年令分布	25
<表 3> 切断의 原因	26
<表 4> 特殊兒童中 障碍兒 發生率	41
<表 5> 身體障碍로 因해 받는 困難	62
<表 6> 身體障碍 兒童을 가진 父母의 要望事項	63
<表 7> 障碍兒童 施設支援基準	76
<表 8> 障碍兒童 施設扩充計劃	77
<表 9> 障碍者 施設要員 処遇改善 基準	79
<表 10> 日本의 社会福祉關係 組織表	86
<表 11> 日本의 社会福祉施設 收容者 1人当 月額経費	92
<表 12> 全国 盲学校 일람표	95
<表 13> 全国盲人 후생시설 및 직업단체 일람표	96
<表 14> 收容対象別 身體障碍者 福祉施設	97
<表 15> 障碍者施設 種類別 認可時期	98
<表 16> 障碍者施設 代表者・性別・年令別・分布.....	101
<表 17> 身體障碍者施設 代表者 学力別 分布	101
<表 18> 肢體障碍施設 代表者の 性別・年令別 分布	104
<表 19> 身體障碍者 施設에 對한 政府補助 現況.....	108

< 表 20 >	身體障礙者 施設の 自體財源	109
< 表 21 >	身體障礙者施設 収容者 職業訓練	113
< 表 22 >	身體障礙者 職業訓練現況	113
< 表 23 >	身體障礙者 収容人員別 施設数	115
< 表 24 >	成人障礙者施設 収容者の 學歷現況	116
< 表 25 >	한국정신장애자 수용시설 실태	122
< 表 26 >	障礙關係事業 機關의 地域分布	122

머릿말

8.15 解放을 前後하여, 우리는 큰 戰亂을 몇차례나 겪으면서 數 많은 心身障害者를 發生케 되었으며, 最近에는 産業化에 따른 産災事故를 爲始하여, 交通事故 및 기타事故로 因한 障害者가 더욱 많이 發生되었다. 또한 임신부에 대한 적절한 指導의 결핍으로 인한 先天性 心身障碍者도 많이 發生하여 우리나라에도 全國民의 2~3%의 障碍者 人口를 추산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

옛날에는 이러한 障碍者들을 제대로 保護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천시하고 심지어는 학대하기도 하였고 극심한 경우 놀이개로 사용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어야겠다는 保護主義가 점차 增加됨에 따라 現代에 와서는 그 保護方法까지 다양하게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障碍者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生活問題를 비롯하여, 社会的 心理的 問題까지 다양하며 따라서 이들을 保護하는 方法도 医療再活, 職業再活, 教育, 社会的再活等 多角的으로 分業化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再活事業이 뒤늦게 始作되어 第三醫學이라하여 醫療的서비스가 먼저 착수되고 곧이어 이들에 대한 生活保護와 아울러 職業 및 教育訓練에 까지 發展한 것은 最近의 일이다.

그래도 진상자들에게 대한 軍事援護事業이 再活事業의 효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産災補償에 따른 再活事業으로 나타났고 一般障碍者

들에 대한 保護事業이 제일 늦게 發展되고 있다.

1981年은 UN이 定한 “世界障礙者の 해”로서 그 準備로서
갖가지 事業이 進行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障害者福祉對策
基本法 마져 制定되지 못하고 있어서 차제에 이의 方向을 제시하
고 福祉事業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다.

예산관계로 문헌조사에 한정되었으므로 기왕에 발표된 각종 研究
報告를 총정리하고 음미하여 현 시점에서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內容
을 간추려서 분석 비판하면서 福祉事業의 方向設定에 參考로 하였
다. 本研究는 特히 障礙者 福祉事業의 現況과 福祉對策을 爲한
基本事業 體制와 基本法의 制定方向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今年에 障礙者の 數를 調査하는 事業이 兒童課의 주관하에 進行
되고 있으므로 그 結果가 끝나는대로 事業計劃의 規模와 運轉이
잡히게 되겠으므로 本研究는 다소 理論的인 面에 重點을 두게 되
었다.

障礙者福祉法의 制定과 體制의 設定에 다소나마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머릿말을 줄인다.

1979. 11. 30.

연구보고자

한 혜 동

第 1 章 序説：研究の概要

THE UNIVERSITY OF CHICAGO

第 1 章 序 設

研 究 的 概 要

第 1 節 研究目的 및 必要性

本 研究의 目的은 肢体不自由者를 爲始한 盲, 聾啞者 等の 身体 障礙者와 精神薄弱者와 같은 精神障礙者들의 分布現況, 特性 및 慾求를 把握하여 障礙者의 再活對策과 아울러 제반 保護對策을 包含하는 立法의 方向, 福祉體制 및 事業의 長期計劃에 따르는 政策的 資料로서 使用할 수 있는 이른바 福祉모델의 구축에 대한 方案을 提示함에 있다.

現在, 世界各國은 勿論 우리나라에도 多數의 心身障礙者가 實在하여 家庭經濟는 말할것도 없고 社會的으로 큰 問題點이 되고 있지만, 이들의 現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一例로 正確한 出現率等 적절한 對策을 강구하지 못할 뿐아니라 예로부터 障礙者를 천시하는 傳統的 觀念이 가시지 않은 이유로 이들이 一般 社會로부터 받는 냉대와 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思料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障礙者 問題로 因하여 相當期間의 努力과 苦難을 겪어온 先進國들의 先驗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文化的 또는 社會 經濟的 特性에 맞는 障礙者福祉 對策을 마련할 時期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 도래한 것으로 判斷된다.

最近에는 障礙者에 關한 各種 研究會가 每年 開催되고 特히 今年에는 韓國에서 世界再活會議를 主催한 事實이 있고 UN에서는 1981年을 “世界障礙者의 해”로 宣布하는 등 相當한 國內外的 努力이 경주되고 있음을 본다.

次際に 障礙者 福祉法의 制定을 爲始한 계반 政策的인 配慮가 있어야 하겠고 再活事業에 關한 總體的인 점검과 事業의 長期計劃 設定을 爲한 準備로서의 “障礙者 福祉 모델”의 구축이 絶실히 要求된다. 現在 特殊教育 分野는 文教當局의 政策的 配慮와 專門家들의 헌신적 結果로서 相當한 發展을 보이고 있으나 福祉의 側面에 對한 研究나 政策的 努力은 別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特히 障礙者福祉體制 確立을 爲한 단권의 研究論文이나 報告書가 缺乏은 尤甚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本 研究와 같이 總體적인 內容을 수록할 수 있는 努力이 絶실히 要望된다 하겠다..

第 2 節 研究 方法

本 研究는 文獻調査와 간단한 實態調査를 結合하여 實施되었다.

本 研究를 爲하여 아래와 같은 계반 努力이 傾注되었다.

가. 既往에 發表된 各種 研究文獻의 읍미
 나. 세미나 報告書 및 調查報告書의 검토
 다. 各圖書館 및 圖書室에 備置된 各種 書籍의 읍미
 라. 施設 探訪을 通한 再活事業의 現況 觀察 및 事業責任者의
 意見 청취
 마. 準備된 設問書에 따른 各施設의 慾求 및 問題點 把握
 바. 公私分野의 再活 및 特殊教育關係 專門家들과의 面談을 通한
 研究의 자문취득
 사. 再活關係의 協會 또는 團體의 對政府建議 및 立法의 方向에
 關한 여론의 청취 等
 外國의 資料로서는 主로 美國과 日本의 것을 收集하였으며 障
 害者의 狀態에 關해서는 特殊教育 資料를, 立法에 關해서는 外國의
 法全을 또한 制度에 關해서는 美國의 大統領室 特別審議機構의 報
 告書등을 참조하였다.

第3節 研究의 日程

本 研究는 아래와 같은 日程을 따라 實施되었다.

- (1) 資料蒐集 : 1979.1 ~ 5.31
- (2) 研究에 關한 專門家の 諮問 : 1979.6.1 ~ 7.30
- (3) 施設探訪 : 1979.8.1 ~ 8.30

(4) 資料의 分析, 檢討 및 整理 ; 6.1 ~ 9.15

(5) 中間報告 ; 8.20 ~ 8.30

(6) 報告書作成 ; 9.20 ~ 11.30

(7) 最終報告 (印刷) ; 12.10

外國書籍의 번역 및 탐독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 約 10日이 늦게 報告書를 作成키 始作하였으나 1979年 末까지 印刷되도록 努力하였다.

訪問한 施設은 천애재활원, 신아원, 성세재활원, 삼육아동재활원, 다니엘학원, 대전 천성원, 성린아동재활원, 원호직업 재활원, 광명원, 성동원, 우리보육원등 이고 설문내용은

가. 장애인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나. 재활사업의 문제점

○ 의료재활에서

○ 직업재활에서

다. 입법조치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

라. 대정부 건의사항 등이다.

第Ⅱ章 障碍者の類型別特性

THE UNIVERSITY OF CHICAGO

PHILIP H. KATZ

第Ⅱ章 障碍者の 類型別特性

心身障碍者の 分類는 目的에 따라 첫째, 社会的 政策的인 面에 重点을 두고 分類하는 法, 둘째, 障碍의 發生原因으로 보아서 分類하는 法, 셋째, 연령에 의하여 分類하는 法, 넷째, 임상기초를 두고 分類하는 方法 등이 있다.^{주 1)}

一般的인 分類를 우리나라 중래의 調查報告書에 나타난 표로서 보면 아래와 같다.

만서 한국장애아동 조사보고서로서 1961年 보건사회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분류로서

1) 肢体障碍

2) 視覚障碍

3) 聴覚障碍

4) 言語障碍

5) 精神障碍

6) 畸形

7) 社会的 障碍

等으로 나누고, 肢体를 切断과, 麻痺로, 視覚을 盲, 片盲(애꾸) 不完全盲 等으로, 聴覚을 完全聾啞, 聾으로, 言語障碍를 말더듬이와 언청이로, 精神障碍를 精神病, 간질, 정신박약으로, 畸形에는 곱추와 편측으로, 社会的 障碍는 混血兒로 細分하고 있다. 다음으로 1972

주 1) 韓國社会福祉年監, 韓國社会福祉研究所 1972.P114

년에 韓國 社会福祉研究所가 發行한 福祉年鑑에 依하면

1) 肢体障碍

2) 視覚障碍

3) 聴覚障碍로만 大分하여, 肢体를 절단, 마비, 기형으로, 視覚을 全盲, 片眼盲, 弱視 등으로, 聴覚障碍를 농아, 농, 난청으로 細分하고 있다. 키비탄 韓國本部가 作成한 身体障碍者 調査表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표 - 1> 心身障碍者 分類

1. 지체 장애 : 절 단

마 비

기 형

관철 기능 장애

2. 시각 장애 : 전 맹

준 맹

약 시

3. 청각 장애 : 농

고도난청

중등도난청

경도난청

4. 언어장애 : 말더듬이

언어 발달지체

음성이상

발음이상

한편 1975年 韓國 身體障礙者 再活協會가 主催한 再活심포지움 報告書의 分類는 1961年度의 韓國장애아동조사 보고서와 같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우선 障礙를 精神障礙와 身體障礙로 大 分하고 이에 따른 細分은 지금까지 나타난 全部分에 對한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資料가 不足한 것이나, 別로 혼한것이 아닌 障礙種類에 關한것은 略述하는 方向으로 한다.

第1節. 精神障礙

精神障礙는 크게 精神的, 간질, 精神薄弱等으로 区分한다. 그런데, 精神病이나 간질은 治癒가 가능한 것으로서 보나 영구적인 精神薄弱과 区分되며 따라서 不具的 (Disability)인 것은 아니므로 障礙를 論할때 흔히 精神薄弱을 主로 다루는 것이 世界的인 통례로 되었다. 쉽게 말해서 정신병이나 간질은 藥物治療가 가능하고 간질은 다소 어렵지만 精神病은 正常人으로서의 回復이 加能하며, 간질도 藥物療法으로 많은 效果를 보고 있다.

精神薄弱 (Mentally retarded)

Wallin 은 ²⁾ 精神薄弱을 “ 2 년 또는 3 년이 상의 進學이 不可能한 者 ” 라 정의했고, Doll 은 ³⁾

1) 社会的 不適応

2) 知的 劣等

3) 発達 遲滯

4) 素質的 劣等

과 같은 特徵을 가지는 것이라 했다. 미국정신박약협회에서는 정신박약을 발달기에 야기되고 適応行動에 欠陷을 갖는 一般的인 知的 可能性 平均 以下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했다. 日本 文部省에서는 ⁴⁾ 精神薄弱을 여러 가지 原因으로 精神發育이 恒久的으로 遲滯되고 이에 따라 知的能力이 열등하고 自身の 일을 처리하는 것과 社会適応에 있어서 현저하게 곤란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 一般的인 知的 能力의 發達이 不充分하거나 不完全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Terman⁵⁾ 은 스탠포드 비네 검사에서 IQ 70 이하 (69 까지) 를 얻으면 정신박약이라 했다.

주 2) Wallin, J.E.W., Children With Mental and Psychical Handicaps, 1950.

3) Doll, E., Carmichael manual of Child psychology, 1946.

4) 文部省, 心身障害의 判別과 指導, 車原 1965.

5) 文柄善, 金承国, 青年發達, 戟東文化社, 1970.

精神薄弱은 여러가지로 分類된다. 心理学에서는 흔히 이것을

- 1) 痴 保 (moron)
- 2) 白 痴 (imbecile)
- 3) 天 痴 (idiot)

등으로 分類한다. 스탠포드 비네 검사에서는 지능지수 50 ~ 69
를 치매로, 지능지수 20 ~ 49를 白痴로, 지능지수 (I.Q) 20 以下
를 天痴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特殊教育에서는

- 1) 教育可能級 (educable mentally retarded)
- 2) 訓練可能級 (Trainable)
- 3) 完全保護級 (custodial case)

로 分類한다. 最近 美国에서는 지능지수 50 또는 60부터 80
까지를 教育可能級으로, 知能指數 50 또는 60 以下 30까지를 訓
練可能級으로, 知能指數 30 以下를 完全保護級으로 分類하고 있다.

精神薄弱의 여부 및 그 程度를 判別하는데 使用할 수 있는 方
法에는 知能檢査, 勞力檢査, 社会生活能力 檢査等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現在 使用되고 있는 知能檢査로는 假性精神薄弱을 가려내기
어렵고, 勞力檢査에서 낮은 点数를 받은 兒童中에도 知能만은 普通
以上이 되는 兒童이 많이 있으며 社会生活 能力檢査에서 낮은 점
수를 받은 兒童中에도 우수한 兒童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中
에서 知能檢査가 가장 잘 開發된 것임으로 知能檢査를 많이 사용
하여 精神의 程度를 判別하고 있다.

精神薄弱을 판별하는데 利用되는 知能檢査는 비네형의 검사와 Wechsler 檢査等이 있다.

간 질

흔히 “지랄병”으로 불려지는 이 간질은 精神薄弱等과 함께 一般의으로 出生前에 母親이 妊娠中에 여러가지 熱性 傳染病, 中毒症, 梅毒等の 疾患을 앓았거나, 分娩中에 難産, 機械分娩等으로 頭部損傷을 입었거나 出生後에 腦炎, 腦膜炎, 中樞神經系疾患, 甚한 熱性傳染病, 營養障礙 或은 頭部外傷等の 既往歴이 있을 때가 많다.

간질에는 여러가지 型 卽, 大發作, 小發作, 精神運動性等이 있으나 一般에서는 大發作을 主로 生覺케 되며 이것은 特異한 前兆가 있는 다음 急作히 意識을 잃어버리고 卒倒하여 全身性인 強直性, 경련을 일으키고 이어 間代性 경련으로 넘어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차츰 意識을 恢復케 된다.

精 神 病

精神病에서는 어려서 부터 正常的인 人性發展을 못하고 여러가지 精神的 外傷을 많이 받고 神經症的인 要素, 性格의 欠陷等を 많이 가지고 자라난 境遇가 많다. 神經精神障害者の 一家中에는 或時

비슷한 病을 앓은 家族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仔細히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韓國人 全体를 두고 볼때 全体의 精神保健上에 있어서 뿐 아니라 特히 여러 가지 社會惡의 問題와도 緊密한 聯関性을 가지고 있어 大端한 重要度を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專門家들의 말에 의하면, 精神病中 精神分裂症 때에는 孤獨하고 非社交的이고 自閉性이 있어 空想을 즐기며 思考에 分裂性이 있어 말의 앞뒤가 聯絡이 없고 条理가 없어지기 쉬우며 여러 가지 幻覺 妄想 等を 가지고 있으며 感情의 表示에도 障害가 있어 適切하지 못할 때가 많다.

조울증 때에는 몹시 甚한 興奮狀態가 繼續되어 한서도 鎮靜을 못하고 떠돌고 부산하며 잠도 잘 안자고 모든것이 지나치게 快活하고 明朗하고 愉快하다 을증상태가 되면 모든 行動이 느려지고 힘이 없고 말도 잘 안하며 모든것을 悲觀的으로 생각하고 우울한 狀態가 된다. 이 조울증은 兒童들에게는 比較的 드문 病이다.

精神障礙者の 社會問題

서울 兒童相談所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精神障害兒童들의 社會的 調節問題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精神病的 증세는 그 性質上 成年期에 들어가서야 完全히 나타나는 傾向이 있으므로 소위 “미치광이”라고 단정지어 지적할 수 있는 年少者들의 數는

比較的 적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간질은 꽤 어릴 때 부터 發作이 나타난다.

모든 病에는 社会問題가 따르며 특히 精神障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科学的 思考方式이 보편화되고 医学的 知識이 發達한 現今에도 精神病이나 간질, 精神薄弱에 對한 一般社会의 反應은 아득한 옛날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精神障礙者들은 社会로 부터 낙인이 찍히게 되고 배척을 받게 된다.

가까운 家族들의 態度도 一般的 경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떤 父母들은 자기 子女의 障礙가 자기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罪責感이나 敗背感을 갖게 되고 따라서 患者에 對한 父母의 態度에는 갈등이 많이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한 극단에서는 지독한 배척으로 表現되는 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극단에서는 지나친 保護와 溺愛로 나타나기도 한다.

精神障礙를 가진 兒童들에 對한 家族과 一般社会의 이러한 反應은 그들의 가뜩이나 어려운 社会適應을 더욱 어렵게 한다. 精神分裂症이라든가 히스테리와 같이 病的 原因 自体가 대개 周圍社会와의 心的 갈등에 직접 뿌리를 둔 경우도 있다. 生理的 또는 體質的 要素가 原因이 되는 障害의 경우라 할지라도 環境과의 密接한 關係는 無視할 수 없다. 家族이나 一般社会에서의 배척적인 태도와 적당치 못한 대우는 病을 惡化시키거나 社会適應의 문제를 招來할 것이다.

이들에게 부닥치는 문제중 하나는 그들이 自助力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들은 社会的 沒理解와 배척을 반격하여 스스로 保護할 수 있는 能力이 없을 뿐만 아니라 判斷力의 결여로 말미암아 日常生活속에 포함되어 있는 허다한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經濟的 自立 能力이 없다. 이리하여 그들의 保護와 扶養의 責任이 家族이나 社會에 늘어간다.

第2節 身体障碍

身体障碍를 普通 肢体障碍, 視覚障碍, 聴覚障碍, 言語障碍, 畸形等으로 区分한다.

어떤 때는 畸形을 肢体障碍에 包含시킨다.

가. 肢体障碍

수족이나 기타 肢體의 절단 또는 마비로 인하여 肢體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약물중독으로 先天的 장애자도 많고 産業地에 따르는 産災障碍者, 交通事故 기타 事故로 因한 障碍者와 더불어 小兒마비나 腦性마바로 因한 마비환자가 많다.

最近에 연세 재활원에서 정리한⁶⁾ 수족절단자의 성별분포, 거주

주 6) 염기선, 수족절단자의 재활사업과 역할 아동복지 78 개요

지, 절단당시의 나이, 가정내 지위, 절단원인등을 보면 재미있는 사항들이 많다.

1977년 1월부터 1978년 9월까지 연세 재활원을 거쳐간 환자가 모두 100명이었고 이중 남자가 80%, 女子가 20%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절단 당시의 연령은 11세~20세가 가장 많으며 환자의 50% 이상이 10대와 20대 이었다. 그 이유로서는 이시기가 가장 成長活動이 活潑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運動도 가장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勤勞從事者로서는 이 時期에 가장 많은 事故가 發生되고 있는데 主로 不注意 또는 자만심에 依한 것으로 分析할 수 있었다.

家庭環境은 上에 속하는 患者가 9%, 中에 속하는 患者가 32%, 下가 59%로서 절단 환자의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단을 하게 된 患者들은 表3과 같이 여러가지 원인에서 절단을 하게 되는데 그중 교통사고가 34%, 그외 機械事故, 폭발사고 등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질환으로서는 순환장애 질환으로서 버거씨병이 1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統計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는 뼈암의 원인으로 절단된 患者가 차츰 많아지고 있으며 外國의 경우에는 事故等으로 인한 외상보다는 疾病으로 因한 절단이 많다는 것이다. 즉 말초 혈관, 질환, 당뇨병의 合病症 때문에 절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당뇨병 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나 그 合病症 때문에 절단하는 境遇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관계의 차이가 연령적으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外國의 境遇에는 老年層의 절단자가 많다고 한다. 절단 부위별로 보면 무릎밑 절단이 41%로 가장 많고 무릎위 절단이 30%로서, 팔을 다치는 境遇보다는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한곳만 절단하는 환자가 85%, 두곳을 절단한 환자가 14%, 기타가 1%쯤 된다.

<표 2> 지체절단 당시의 성별, 나이 분포

나 이	남	여	계
1 ~ 10	11	5	16
11 ~ 20	29	6	35
21 ~ 30	15	5	20
31 ~ 40	15	1	16
41 ~ 50	7	1	8
51 ~ 60	2	2	4
61 ~	1		
	80	20	100

자료 : 아동복지, 홀트아동복지회 78. 겨울호

< 표 3 > 결난의 원인

사 고 원 인	실수 (%는 동일)
자 동 차	6
버 스 · 트 렉	12
기 차	16
기 계 사 고	15
감 전	2
안 전 사 고	7
총 상 · 폭 발 들	14
독 중 · 뱀	3
동 상	4
화 상	1
압	5
관 전 염	3
버 거 씨 병	10
당 뇨 병	1
연 탄 까 스 중 독	1
계	100

자료 : 아동복지, 홀트아동복지회 '78 겨울호

마비중에는 뇌성마비와 소아마비가 있다. 소아마비는 잘 알려진 병이나 뇌성마비에 관하여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 뇌성마비아 복지회가 펴낸 資料에 依하면 아래와 같은 제반 特性을 알 수 있다.

뇌성마비란 중추神經系의 손상으로 인한 障礙狀態의 總稱이다. 腦性이란 腦의 損傷을 意味하고 마비는 근육조절 機能이 없다는 뜻으로 하나의 증상이다. 뇌성마비는 아주 심한 程度에서 몸의 運動을 전혀 調節할 수 없는 狀態도 있고 아주 경한 程度까지 다양하다. 경한 言語障礙만 있는 境遇도 있다. 腦性麻痺는 유전 또는 전염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므로 死亡의 直接 原因도 되지 아니한다. 腦性麻痺가 痲痺障礙兒들 가운데 많은 部分을 차지하기 때문에 腦性麻痺를 理解한다는 것은 重要한 것이다.

出産前이나 出産後에는 産母의 바이러스병 특히 독일풍역등의 영향으로 또는 어머니의 피에는 RH 인자가 없고 아들에게만 있을 때 일어나는 血液型의 不調和, 임신中이나 出産中の 병발증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 조산, 기타 폐쇄나한 증후등이 원인이 된다.

出生後에는 事故, 外傷, 腦중독, 疾病, 幼兒학대 등의 原因으로 發生한다.

증상은 아주 다양하여 腦의 손상의 程度와 部位에 따라서 어떤 腦性麻痺兒는 相當한 期間동안 거의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出生時부터 심한 증상을 나타낸다. 身體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젖을 빨기 어렵고, 근육조절 能力이 弱하거나, 視覺, 聽覺 障礙등이나 근위축, 경련등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行動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잘보채고, 注意散漫하고, 잘울고 知能이 떨어져 기도 한다. 腦性麻痺의 임상적 分類로는

- 1) 경련형
- 2) 무도형
- 3) 강직형
- 4) 운동실조형
- 5) 진전형

등이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그들의 일생에 끊임없는 社会的 個人的 문제와 영향을 준다. 가족에게도 罪責感이나 不安, 울분 또는 不和등을 일으키기 쉽다.

小兒麻痺은 바이러스에 屬하는 병원균이 運動을 지배하는 神經세포가 있는 곳을 침범하여 그 神經領域을 麻痺시키는 질환이다.

小兒麻痺의 질환은

- 1) 急性期
- 2) 回復期 (發病後 2個月間)
- 3) 殘留期

등 3期로 나누어 진다. 急性期에는 갑작스런 高熱과 頭痛, 구토, 咽喉痛, 근육통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의 麻痺를 일으키게 된다.

治療로서는 麻痺筋肉을 回復시킬 수 없고 다만 筋肉의 不均衡, 四

肢의 變形等을 手術하고 補助器의 物理治療로 殘存身體의 機能을 最大限으로 活用토록 하는 方針에 없다. 急性期에는 生命을 잃지 않도록 最善을 다해야 한다.

나. 視覺障礙者

美國에서는 經濟的 및 法的인 目的 때문에 醫學的 및 生理學的 기초 위에서 視力과 視野의 程度에 따라 시각 障礙者를 定義해 왔다. 잘 보이는 눈의 矯正視力이 20/200 또는 그 以下이면 盲이라 해왔고 잘 보이는 눈의 矯正시력이 20/200 과 20/70 사이에 속하면 弱視라 했다. 教育에서는 點字를 主로 읽는 視覺障礙者를 教育的인 盲者라 하고 特殊한 條件下에서 큰 文字나 普通 文字를 主로 읽는 視覺障礙者를 弱視라 한다.

視覺障礙의 原因中에서 가장 흔한 것은

- 1) 出生前 影響 (白內障 및 강막변질)
- 2) 伝染病 (梅毒)
- 3) 傷 害
- 4) 中毒 (水晶体後方纖維 增殖症)
- 5) 증상등이라 한다

視覺障礙의 判別에 關하여 美國의 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Blindness 는 Snellen Chart 를 使用해서 判別하는 境遇,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라고 한다.

- 1) 3세 : 20/40 또는 그이상인 시력
- 2) 4 ~ 6세 : 20/40 또는 그이하의 시력
- 3) 유치원 ~ 3학년 : 20/40 또는 그이하의 시력
- 4) 4학년 및 그이상 : 20/30 또는 그이하의 시력

시력을 測定할 때는 환자의 行動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고 읽기 곤란이나 其他 視覺을 使用해서 하는 學習에 있어서 問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專門的인 驗査와 綜合的인 身體檢査를 받게 해야 한다.

視像의 欠乏은 空間知覺을 어렵게 하며 盲人들을 視覺 以外의 다른 感覺으로 空間關係를 認識하고 있다. 空間關係에 있어서는 視覺障礙의 程度가 심한 者와 보는 者 間에는 差가 있어 正眼者보다 劣等하다. 또한 抽象的인 思考에 있어서도 正眼者보다 劣等하다. 그래서 視覺障礙者는 正眼者보다 구체적이고 융통성이 不足하며, 놀이의 구상, 상상, 꿈 등에 있어서 劣等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다. 聽覺障礙者

사람의 生活에 있어서 소리는 하나의 信號로서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聽覺의 機能은 다만, 소리를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하나의 記號 (Symbol)로 이해할 때 그 機能을 다하는 것이다.

때문에 聽覺에 障礙를 입게 되면 言語記號를 知覺하지 못하게

되며, 익히지 못하게 되어, 言語生活에 있어서 듣기, 말하기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에 까지 重大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聽覺障礙는 言語의 発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精神発達, 思考能力, 概念形成, 情緒発達와 같은 것까지도 저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聽覺障礙者에 대하여는 医学的, 心理学的, 社会学的, 教育的, 職業的인 特別한 配慮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聽覺損失과 再活이란 점에서 볼때 再活의 可能性과 關連하여 補聽器를 使用하거나, 手術을 하여 聽覺의 機能을 充分한 水準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경우에는 聾이라 하지 않으며, 그리고 口話法 (Oral methad) 에 의하여 위와 같은 또는 類似한 結果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聾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聾은 위와 같은 方法에 依하여도 좋은 結果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O'Neill에 依하면 聽力損失의 程度로 볼때 이를 量的으로 評價하는 것으로 平均 聽力損失이 20 ~ 40dB은 輕度 聽力損失, 平均 聽力損失이 40 ~ 60dB은 中等度 聽力損失, 平均聽力損失이 60 ~ 80dB은 重度 聽力損失, 80dB 以上은 聾이라 했다.

McConnell의 定義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 聾 (deaf) : 聽力損失이 태어날때 부터 아주 심하였거나, 언어 이전의 시기 (2, 3세 以前) 에 正常的인 口語發達에 저해를 받은 자

2) 難聴 (Partially hearing) : 言語習得 以前의 時期 또는 나중에 聽力損失을 입었거나 그리 심하지 아니하여 多少 口語發達에 障害을 받았거나, 言語習得 以前의 時期에는 正常的인 聽力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중에 聽力損失을 입은 者

聽覺障礙가 言語를 習得하기 以前에 올때, 聽力損失의 程度에 따라 差이는 있겠으나 正常兒와 같은 단계로 言語의 發達을 가져올 수 없는것은 事實이다.

또한 비록 言語를 習得한 後에 聽覺障礙를 입었다 하더라도 言語生活에 混亂을 가져오며, 發音의 正確性이 低下되며, 抑揚의 異常과 音聲의 異常이 있게되나, 또한 聽覺障礙가 전혀 知的 發達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뿐아니라 청각장애자는 正常者에게 따돌림을 받게되어 고독하게 되고 그 결과로 劣等感, 無關心, 怯懦, 急速한 気分轉換, 寡黙, 不安, 犯暴과 같은 反應이 증가한다.

다. 言語障礙

言語는 다른 무엇보다도 人間 發達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言語는 人間의 精神發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重要的 知的인 道具이다. 人間의 社會는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에 의하여 成立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은 言語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言語障礙를 받게되면, 그사람의 知的, 情緒的, 社會的, 人格的인 發達에 큰 影響을 받게 된다.

Hull 이란 學者는 말을 들어 이해하고, 말로써 表現하는 能力이 없는것을 口頭語 障礙라 하였고, 말을 다만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볼때 그 수단에 問題가 있는것 만을 談話障礙라 하여 言語障礙를 度義로 두가지 測面에서 定義하였다. 주7]

그러므로 言語障礙란 同一 地域에 사는 同年令의 者에 比하여 言語의 理解力, 表現力이 不足한 경우라 할 수 있다.

言語障礙를 分類하면 大略 3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 1) 口頭語障礙: 中枢神經系의 損傷에 의한 言語障礙와 經濟的인 不利와 少数集團에 의한 言語障礙
- 2) 談話障礙: 調音障礙, 音聲障礙, 調音 및 音聲障礙, 말더듬
- 3) 다른 條件에 의한 談話 및 言語의 障礙: 聽覺障礙, 腦性麻痺, 口蓋裂, 精神薄弱等

言語障礙의 原因으로서는

- 1) 言語發達 遲滯
- 2) 調音 障礙
- 3) 말 더듬
- 4) 音聲障礙
- 5) 重複 障礙

로 区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言語發達 遲滯의 原因으로는,

- ① 精神發達の 遲滯
- ② 機能的 原因

주 7. 김승국 김옥기, 이춘섭, 민은식 공저, 특수아동교육, 백목출판사, 1978. 서울 P 218

③ 腦 損 傷

④ 聽力 損失

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調音障礙의 原因은,

① 發音器官에 障礙가 있을 경우

② 聽覺障礙가 있을 경우

③ 言語環境이 나쁠 경우

④ 지능이 뒤질 경우

⑤ 기분이 不安할 경우 등이 있다.

말더듬의 原因으로서는,

① 幼兒期에 말이 미숙한 것을 주위사람들이 말더듬이로 단정하여 악화시킨 경우

② 가족중 말더듬이가 있어 닮은 경우

③ 심신의 지나친 긴장으로 發音器關의 말조부에 경련이 일어나는것

④ 빠른 말버릇

⑤ 어떤 장면에 대하여 공포, 조조, 불안을 가질때

⑥ 말하는데 대한 공포

⑦ 말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나치게 강할때

⑧ 잘쓰는 손의 變更

⑨ 심리적 갈등

- ⑩ 발음기관의 장애
- ⑪ 신체적, 심리적 충격을 받을때
- ⑫ 사회적인 부적응 등이다.

言語障礙의 原因은 아래와 같다.

- ① 聲帶의 障礙
- ② 口蓋麻痺
- ③ 神經麻痺
- ④ 口蓋裂
- ⑤ 聽覺障礙
- ⑥ 情緒障礙
- ⑦ 喉頭的 疾病
- ⑧ 코의 疾病
- ⑨ 呼吸의 나쁜 습관
- ⑩ 中枢性 障礙
- ⑪ 아에노이드
- ⑫ 腦性麻痺
- ⑬ 精神薄弱
- ⑭ 發聲法의 나쁜 습관등이 있다.

重複障礙의 原因으로서는

- ① 腦性麻痺
- ② 精神薄弱

③ 聴覚障碍

④ 失語症

⑤ 口蓋裂

과 같은 것들을 들을수 있다.

이들을 판별하는데는 選別検査와 診斷検査等の 方法이 있다.

第Ⅲ章 障碍者の出現狀況 및 趨勢

第 1 章 緒論

第 三 章 障 害 者 의 出 現 狀 況 及 趨 勢

1961 年 에 保健社会部 韓國兒童福利委員會가 主權한 韓國障害兒童 調査의 報告에 의하면 1961 年 4 月 10 日 現在 滿 18 歲 未滿의 障害兒童 實數는 77,903 名으로서 在別로 보면 男 49,560 名 (63.6 %), 女 28,343 名 (36.4 %) 이며 男子가 女子에 比하여 21,217 名 (27.2 %) 가 더 많은 障害를 입고 있다.

都市와 農村을 市部, 郡部로 大別하여 比較해 보면 市部 13,859 名 對 郡部 64,044 名으로서 兒童 10 萬對 障害率은 市部 4,906, 郡部 6,772 로서 郡部障害率이 1,886. 1 더한 狀態下에 있다.

障害兒 種別 分布를 보면, 第 1 位 痲痺 (38.7 %), 第 2 位 聾聵 (10.7 %); 第 3 位 切断 (7.8 %), 第 4 位 癱瘓 (7.8 %), 第 5 位 片眼盲 (7.6 %), 第 6 位 攣手 (6.9 %), 第 7 位 말더듬이 (4.5 %), 第 8 位 兩眼盲 (3.0 %), 第 9 位 언청이 (2.8 %), 第 10 位 精神薄弱 (2.7 %), 第 11 位 간질 (2.2 %), 第 12 位 不完全 盲 (1.6 %), 第 13 位 精神病 (1.3 %), 第 14 位 翻足 (1.3 %), 第 15 位 混血兒 (1.1 %) 로 되어있다.

兒童 10 萬 對 地域別 障害率을 보면 全國이 662.1 로서 1,000 名中 6.6 名의 比率로 되며 濟州道가 1,026.8 로서 首位를 차지하며 全羅南道 857.0, 慶尙南道 742.5 의 順으로 되며 서울 特別市가 345.2 로 最下位에 있다.

또한 1966年度에 保健社会部가 主管하여 実施한 障礙者 調査報告에 依하면, 人口 10萬 對比로 總數가 382.4이고 肢體不拘가 186.2, 視覚障礙 55.5, 聴覚 言語障礙가 69.1, 精神障礙가 46.1, 聾啞 其他 기형 22.8, 混血兒 2.7로 나타났다.

한편 1973年度 保健社会部에서 調査한 家庭福祉基礎資料 調査의 一部로 나타난 障礙兒童 出現率을 보면 全國 平均 0.8%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大都市 0.6%, 中都市 1%, 農村 1.5%로 나타나고 있다. 障礙種別로 보면, 肢體障礙가 51.5%로 가장 많고, 다음이 精神障礙로 24.2%, 그다음이 기형 12.1%, 言語·聴覚 6.1%, 視覚 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72年 12월에 사단법인 慈行회가 調査한 정신박약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訓練可能級 以下를 조사한 결과 이의 평균 出現率은 0.55%이다. 이것은 이론 出現率인 0.62% 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가치있는 資料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소득출현율(0.55%)와 理論出現率(0.62%)에 해당하는 訓練可能級 以下 精神薄弱兒童의 추정수는 1979年 現在 理論率에 따라 111,943名(0~19세)이고 所得率로 99,717(0~19세)명이 된다.

또한 1973年 12월에 사단법인 자행회가 實施한 서울特別市의 身體障礙兒童 實態調査에 따르면, 서울特別市 兒童數 2,664,517名 중에서 視覚障礙兒가 0.17%인 4,516名이 나타났고, 聴覚障礙兒는

0.3 %인 7,992 명이, 肢體障礙者는 0.73 %인 19,456 명이나 되고 虛弱者는 0.18 %인 4,800 名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總 1.38 %의 出現率을 보이고 있다.

한편 特殊兒童의 發生의 見地에서 韓國과 美國의 出現率을 比較한 것을 特殊兒童 教育이란 冊에^{주1} 의하면 아래의 表와 같다.

<表 - 4 > 特殊兒童中 障礙兒 發生率

種 別	韓 国	美 国
1. 精 薄	2.28	2.3
2. 言語障礙	0.46	3.5
3. 聽覺障礙	0.30	0.6
4. 視覺障礙	0.17	0.1
5. 肢體障礙	0.73	0.5
計	3.94	7.0

資料出所：特殊兒童 教育，백록출판사

주1」 김승국, 김옥기, 이준섭, 민은식 공저, 특수아동교육·백록출판사 p14.

韓國의 정신박약 出現率은 IQ 2SD 以下의 理論率로 表示하였고
言語障礙의 發生率은 慶北道 教育委員會에서 1971年에 道內 國民
學校 學生을 대상으로 하여 調査한 것이며 聽覺, 視覺 및 肢體障
碍의 推定率은 서울 市內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의 兒童을 조
사한 결과이고 美國의 것은 美聯邦教育局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
로 보건대 약 4%의 障礙兒童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以上에 열거한 여러형태의 조사결과를 놓고 分析할때 各調査가
그 基準이나 方法, 対象에서 다르므로 이를 대조 평가하기가 어렵
고 특히 兒童調査에 치중하므로서 全體 障礙者의 數에 關해서 結
論을 내릴만한 資料들이 못되므로 우리나라의 障礙者 出現率을 한
마디로 단정키는 어렵다. 어렵잖아 兒童 人口의 4%만 잡더라도
兒童 70만여명이 된다. 하겠고 現在 兒童課에서 調査하는 障礙兒
調査 結果가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

또한 成人障礙者의 出現率은 兒童의 出現率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므로 全體障礙者數는 적어도 경중 포함하여 150萬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증만 따져서 약 人口의 2%로 계산해도
70萬名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여간 障礙者의 出現에 關하여는 Census에 포함시켜서 하던지
보다 철저한 Sample 조사를 통하여 全人口를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9.25) 世界兒童의 해를 맞아 서울시와 사단법인

慈行회가 마련한 「心身障碍児의 福祉와 教育对策의 方向」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거론된 것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²⁾

韓國社会事業大学長 李泰榮氏의 發表에 따르면, 현재 보사부가 全國의 障碍者數를 60년에는 81,321명 66년에는 11만 1천 7백 5명, 75년에는 17만 8천명, 最近에는 2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慈行회는 全國의 訓練可能정박아(IQ 60이하)수를 9만 5천명으로 보고 있고 73년 서울의 신체장애아 수를 3만 6천 7백 64명으로 보고 있는등 資料마다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障碍者 出現率도 가지각색이어서 保社部는 60年度の 경우 0.66%, 66년에는 0.38%로 낮추어 추계한데 비해 慶北道教育委員會는 비슷한 기준 연도인 67, 연도의 出現率을 6.06%로 발표하고 있어 정부 기관들의 추계오차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집행부서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같은 정부기관인 文敎部도 지난 70年 우리나라의 出現率을 4.69%라고 밝히고 당시 學令児(6~17세)중 약 47만명이 장애아라고 추정함으로써 보사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학장은 이 밖에도 美國의 比率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에는 1백 21만 4천 5백명 정도의 障碍者가 있고 이가운데 학령기兒童(6~18세)은 約 38만 5천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토록 많은 障碍兒들을 위한 수용 및 교육시설이 너무나 不足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주 2) 한국일보 1979.9.26. 3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용시설은 52개 (시각 8, 청각 10, 정박 19, 지체 15개)로 수용인원은 4천 4백 55명에 그친다. 또 3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아의 경우는 교육시설 및 수용시설 收容者수가 전체의 0.07%인 이만오천명 뿐이고 나머지 장애아들은 교육이나 治療의 혜택을 받지 못한채 社會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따라서 전국 장애인 數를 120만 여명으로 추산하면 教育의 혜택을 받거나 수용시설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장은 이와 같은 실태를 종합해 볼때

- 1) 믿을만한 실태조사가 없고
- 2) 장애자의 복지, 재활을 위한 專門家와 이의 養成機關이 없고
- 3) 現在의 障礙者 施設과 設備가 不良하고
- 4) 障礙者에 對한 社會的 認識이 잘못돼 있는점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障礙者福祉 基本法을 制定, 障礙者들을 일제 등록시켜 科學的으로 判別해 積極적인 教育 및 再活對策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67. 8. 1. 現在 調査한 日本의 精神薄弱者數는 505,100명으로 100名에 대하여 5명程度の 精神薄弱者가 있는것으로 되어 있다.(日本의 障礙者 再活서비스 75年 참조). 英國의 경우 1969年度 調査報告에 依하면 約 3百萬名の 心身障礙者가 있고 (Resettlement Policy and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영국고용성 72년도 발행 참조). 美國의 경우 每年 450,000名の 職業

再活이 必要한 障礙者가 發生하고 (VRA HEW 1965) 있다고 한다.

브리타니카 1970 년도 백과사전에 보면 美國에 約 20,000,000 名

의 障礙者가 1965 年度에 있는것으로 되어있고 이중 約 4,000,000

名은 職場이나 家事나 學業을 할 수 없는 障礙者로 되어 있다.

第Ⅵ章 再活에 関한 理論 및 實際

第 17 章 数据库系统

第Ⅳ章 再活에 關한 理論 및 實際

再活의 意味는 障礙者로 하여금 自己實現의 機會를 갖도록하기 위하여 그들의 身體的 및 社會的 障礙를 除去하거나 줄여주는데 있다 하겠다. 이를 爲해서는 醫學的, 教育的, 職業的, 社會的 諸般 서비스가 動員되어야 한다. 이는 勿論 衣食住 등의 生活保障을 갖추되에 있어야 할 것이다.

第1節 醫療的 서비스

醫療의 서비스와 直接 關連되는 것은 再活醫學이다. 원래 이 用語는 美國의 뉴욕 의과대학 再活醫學科 教授인 H.A.Rusk 博士가 治療醫學과 豫防醫學 다음으로 第三의 醫學이라 불려 發展된 것으로 世界 第2次大戰 以後에 使用되어 오는 用語인 것이다. 특히 障礙를 爲한 物理治療와 作業治療는 再活醫學의 大部分을 이룬다. 現代에 이르러서는 再活工學까지 登場하여 欠損된 身體의 部位를 代置하거나 補助하도록 하고 있다.

物理治療란 運動療法, 熱療法, 電氣療法, 水治療法 등으로 身體의 機能을 開發하여 주거나 또다른 변형을 豫防하는 治療活動이다.

作業治療란 作業을 治療의 媒介로 利用하여 障礙者에 대한 心理的 支援은 勿論 身體的 또는 職業的 能力을 向上시키는 醫學的 活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作業治療士를 養成하는 機關이 없다.

再活을 効果의으로 成就하려면, 看護員이나 補助器 및 義手足製作技士 心理學者, 社會事業家들과의 協同도 再活醫學서비스를 爲해 必要하다. 再活醫學은 환자나 障礙者의 全人的 役割遂行을 主된 目標로 하기 때문에 一般醫學은 勿論, 精神醫學의, 心理的, 社會的 또는 職業的 서비스를 提供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再活醫學科를 두고 있는 곳을 세브란스병원, 우석병원, 漢陽大病院, 聖母病院, 부산메리놀 病院등이다. 最近에서야 各 看護大學 教科課程에 再活科目을 두고 있으며 實習도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補助器와 義手足製作技士, 作業治療士, 言語治療士, 聽力檢査要員 같은 再活要員을 訓練시키는 教育機關이 별로 없고, 몇몇의 保健專門學校에서 一部學課目으로 다루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한다. 우리나라의 産業化와 더불어 점차 增加하고 있는 産災로 因한 障礙者의 再活을 爲해서는 이러한 分野의 發展이 크게 요청된다 하겠다. 特히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聽力檢査要員을 養成하는 教育機關이 必要하다.

勿論 各 障礙種別에 따라 医療再活의 方向도 細分하여 論할 수 있겠다. 즉 神經 및 精神障礙者를 爲하여는 資格있는 專門職員에 의한 充分한 診斷과 適當한 治療를 받아야 하며 또한 醫師, 心理學者, 社會事業家等이 Team Work을 하여 診斷과 治療를 해주어야 한다. 뇌성마비를 爲하여는 적절한 物理治療가 병행되어야 하고 복합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精薄兒는 特別한 治療가 要請된다.

盲兒를 爲해서는 안구적출을 위시하여 視力回復, 治療, 手術 및 人工眼球供給 등이 必要하며, 小兒麻痺를 爲해서는 手術이나 "부레 이스" 등 補裝具가 必要하다.

小兒麻痺에 있어서는 發病後 3個月間이 物理治療로서 가장 效果를 보는 時期이며 늦어도 滿1年 6個月까지에 理想的 治療結果 90% 機能恢復을 시킬 수 있다. 補助裝具에는 長・短足 補助器, 콜셋트나 義手足等이 있다. 또는 지팡이나 木脚을 使用할 수도 있다. 長期間 기어다녔거나 앉아 있던 환자들은 大概 關節이 屈曲되었거나 脫臼癰이 생기거나 하는 畸型的인 姿勢를 가지게 되므로 整形手術이 必要하게 된다. 즉 腿延長術이 必要하고 施術後 適合한 矯正運動治療가 요청된다. 物理治療에서는 마사지, 矯正運動, 電氣治療, 光線療法, 근육 자극등이 있다.

聾啞者를 爲해서는 適切한 身體檢査를 하여 聾의 原因을 除去하고 治療를 함으로써 오래동안 障礙로 因한 苦痛을 겪지 않고 正常 社會生活을 향유케 될것이다. 또한 聽力回復이 不能케 된 境遇는 그 失聰을 補償할 수 있는 敎育을 받아야 할것이다. 聽力이 完全히 상실되지 않은 사람을 爲해서 補聽器가 必要하다.

第2節 職業再活

職業再活 서비스는 障礙者의 社會復歸라는 再活的 側面에서 볼 때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人間다운 生活은 스스로의 收入으로

独立的인 生活을 해낼 수 있게 될때 成立된다고 본다. 美國을 爲始한 先進諸國은 障礙者의 職業的 潛在能力을 多角的으로 評價하기 爲하여 一定期間을 활해하고 있어서 美國의 경우 身體障礙者를 爲해서는 6個月, 精神障礙者를 爲해서는 18個月의 評價期間을 職業再活法에 따라 保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評價된 結果內容에 입각하여 한 障礙者에게 適合하다고 思料되는 職業訓練을 시켜 社會에 復歸시키고 있다. 職業訓練은 職業再活院이나 一般企業體의 實習訓練을 통하여 實施되고 있다. 흔히 綜合再活 施設의 一部로서 職業再活部를 附設하는 形式으로 職業再活을 實施하는 경우가 많으나 交通便利나 기타 事務的인 便制度는 높다하겠으나 職業再活에 相當한 努力과 財源을 投入할 정도로 규모나 施設이 갖추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職業再活院을 獨立시키는 편이 더욱 能律的이라 사료된다. 附設式으로 할때는 制限된 職種만을 訓練시킬 수 밖에 없고 또한 現職訓練과의 유대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경우 대체로 일거리를 주문받아서 再活院에서 生産業까지 兼하는 例가 허다하다.

職業再活院을 獨立해서 運營할 경우에는 自體院 뿐아니라 他院의 收容者로 依賴받아서 보다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고 보다 專門化할 可能性이 커진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국립원호재활원은 시설 규모나 運營의 質로 보아 수준급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의 成功 비결은 역시 국가에서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것이다. 一般職業

再活施設도 國家에서 責任지고 일거리를 맡아주면 一定期間이 경과한後 거의 自動的으로 還營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公同적인 意見이다.

또한 職業再活院에서 一切를 訓練시키지 않고 現職訓練을 通하여 企業體에 依賴할 경우에는 訓練經費가 低廉하게 들고 一般企業社會의 現實에 빨리 適應하게 되고 보다 多樣的 職種을 開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保護의 손길이 따라가서 障礙者의 醫藥的, 心理的 및 社會的 欲求를 充足시키도록 배려되어야 하고 이를 爲하여 産業社會事業家の 養成과 配置가 要請된다 하겠다. 職業再活은 訓練시키고자 하는 職種의 將來性이나 收入展望을 고려하고 또한 이를 감당해야할 障礙者의 諸般 條件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先進諸國에서는 障礙者의 職業再活을 爲해서 特別法이 制定되어 이들의 就業機會를 法律로서 保障하고 있다. 即, 企業體의 勤勞者數의 一定 比率로 障礙者를 의무적으로 採用하도록 하며 또는 特定職種을 障礙者에게 우선적으로 할애하도록 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企業體에게는 各種補助金이나 稅制上的 特惠 또는 금융상의 特惠를 주는등 이를 促進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러한 立法措置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 또한 社會에 復歸하기 어려운 보다 심한 身體的, 精神的 條件을 갖고 있는 障礙者라 할지라도 비록 制限된 範圍內에서라도 이들의 能力限界內에서 일할 수 있는

場이 마련될때 보다 人間的인 처우가 될것이다. 外國에서는 隣保授産場 (Sheltered Workshop) 또는 家内所得事業 (Household income raising works) 등을 마련하여 도와주고 있다.

授産場은 원래 廢品修理工場의 性格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나 지금은 큰 규모로 확대된 경우가 많고 어떤것은 Good will Industry라 해서 큰 규모로 수리나 재생 시설로 상당한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어떤 수산장에서는 大企業體의 部品組立 일이나 製品의 포장일 같은 것을 하정하여 障礙者에게 適合한 作業環境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授産場을 職業評價나 訓練을 위한 機關으로 活用하기도 하며, 수산장까지 올 수 없는 障礙者를 위해 일거리를 家庭에까지 운반해주는 일도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障礙者의 職業再活을 위한 施設로 勞働庁 산하의 産業再活院과 원호처 소관 水原國立職業再活院이 있고 保社部에서 하고 있던 再活院은 廢止해 버렸다. 기타로 大田의 남시굴씨가 운영하는 성세재활원에서 綜合再活 施設의 一部로서 實施하고 있고 仁川에 성린아동직업재활원에서 小規模로 하고 있으며 서울三育兒童再活院에서도 작은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一般收容施設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으나 그 규모나 質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水原에 있는 職業再活院의 體制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援護處 國立職業再活院의 設置目的은 援護對象者의 職業再活을 為

한 技術教育 施設과 事業施設을 設置하여 技術을 習得시키고 就業을 하게 함으로써 就業對象者의 生活安定을 期하게 함에 있다.

이 再活院은 1963.4.16에 大統領閣下의 設置認可와 아울러 下賜金으로 設立하여 同年 9.25日에 開院하여 11.1 처음으로 技術教育을 開始하고 1964.1.5 일에 生産工場도 이동하게 되었다.

技術教育을 爲해서 入所하게 되는 對象者는 연령이 만 15才~ 35才된 자로서 상이군경, 援護對象者의 子女, 전몰군경의 未亡人 및 特別援護對象者 및 子女로 되어 있다.

教育科程 및 期間을 보면, 基礎理論 教育이 3個月, 專門教育 3個月, 實習教育 6個月이며 縫裁工科만은 6個月 科程이다.

教育期間中の 待遇로서 宿食 및 日用品은 無償支給되고 教育修了後에는 本院이나 各 分組合 生産工場에 就業이 된다. 이들은 各 官轄援護支庁을 通하여 選拔되어 (3月, 9月) 入所하게 된다.

生産工場은 被服工場, 印刷工場, 木工場, 機械工場 등을 두고 있다.

被服工場の 施設은 콘크리트造로서 建坪이 294坪이며 裝備로서는 미싱 200台, 裁断器, 오바로구 外 各種미싱이 있다. 이곳에서 나오는 生産品으로는 各種被服을 爲始하여 各種學生服, 其他 被服類이며 生産能力은 日当 1,200着 정도이다.

印刷工場の 施設은 콘크리트造로서 建坪이 200坪이며, 裝備로서는 活版印刷機, 謄寫機, 주조기, 紙形鉛版機, 自動裁断機 外 9種이며, 定期刊行物, 高級 原色, 謄寫印刷, 各種 장부, 新聞등이 生産되고 生

産能力은 日当 150 連 程度이다.

木工場은 建坪 350 坪에 콘크리트造로 施設이 갖추어져 있고 自動매機, 万能丸据機外 17 種의 裝備를 마련하여 什器, 各級學校 책걸床, A.P.T 후라쉬門 및 窓戶類를 生産하고 日当 100 組 정도 生産할 能力을 갖추고 있다.

機械工場은 建坪 56 坪에 콘크리트造로 설치되었고, 旋盤, 불반, 프레스, 밀링, 용접 기의 6 種의 裝備를 갖추고 各種 機械附屬品, 삼, 鉄物類를 하루 500 정도 生産할 수 있게 되어 있다.

発注時의 利点으로는 첫째, 國家機關이므로 隨意契約이 可能하고, 둘째로, 非營利機關이므로 廉価納品이 되고, 셋째는 発注物品의 責任 生産이 可能한 것 등이다.

機構를 보면, 院長 밑에 庶務課, 生産教育課, 技術教育所가 있으며, 生産教育課에 被服工場, 印刷工場, 木工工場, 機械工場을 두고 또한 各分組合에 같은 工場이 있으며, 技術教育所에는 縫裁工科, 印刷工科, 家具工科, 機械工科등을 두고 있다.

關係法規를 記述해 보면, 生産品の 優先 購買에 관하여 職業再活法 第 13 条에 따라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國營業체에 적용되며, 生産品の 價格은 材料費, 勞務費 其他 直接費만 算定하도록 職業再活法 第 18 条에 명시되어 있고, 隨意契約 可能으로는 豫會法 施行令 第 112 条의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 重点支援에 관하여는 大統領訓令 第 37 号와 國務總理訓令 第 121 号等이 발효되고 있다.

- 앞으로 우리나라는 障害者중 職業訓練 適格 対象者를 選定하고
訓練할 수 있는 労働庁의 技能을 強化하고 訓練된 障害者를 労働
庁의 各地域 事務所에서 就業 斡旋을 專担할 수 있도록 特別部署
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第3節 障害者를 위한 教育

障害者에 대한 教育을 論할때 가장 먼저 關連되는 것은
特殊教育이라 하겠다. 心身의 障礙가 반드시 教育的 障礙를 隨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障礙의 程度와 狀態에 따라 教育에
特別한 注意를 받아야할 경우가 많다. 例컨대 보지 못하는 盲者에
게는 손으로 만져서 배울 수 있는 점자나 커로 들을 수 있는
錄音施設을 設하고 듣지 못하는 聾者에게는 手話가 必要한 것이다.
특히 步行器官이나 感覺器官에 障礙가 있든가 知的, 情緒的 機能에
障礙가 있을때 正常兒童이 받을 教育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때에 特殊教育이 要請된다. 特殊教育이란 教育的 目的은 正常兒
童과 同一 하지만 그들의 特殊狀態에 따르는 教育的 方法이 다른
것이다. 特殊教育을 爲하여 반드시 特定 教育機關에 分離收容하여
야 할 必要도 없다. 先進國에서는 障害者를 特殊學校에 따로 보
내는 것보다 一般學校에 障害者를 爲한 특수반을 두어 教育課程中
때때로 一般人과 接促을 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는 경우가 더
좋다고 한다. 또한 一般學校의 特殊學校를 利用할 수 없는 省들

為 하여는 特殊學校를 利用하지만, 特殊學校도 기숙사제 보다는 通學制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 아유인숙, 成長期의 兒童에게 人格形成에 도움을 주기 為하여 家庭生活을 하게하려는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77年末 現在 肢體不自由 學校가 4개, 聾學校가 19개, 盲學校가 11個, 精薄兒 學校가 15個가 있고 特殊學校를 가진 大學은 이화여대, 단국대학, 한국사회사업대학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特殊教育機關 配置를 判別해 주는 機關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一般學校에 머물러 공부할 수 있는 兒童도 建物 외 不適合 때문에 特殊學校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될때 上級學校의 進學問題가 야기되기도 한다. 즉 肢體障礙兒童을 為하여는 계단을 없애고 완만한 경사로 윗층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하고 盲兒를 為해서도 각종 안내시설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特殊教育은 障礙의 種別 그 程度에 따라 각각 特性이 있을 것이다. 또한 特殊教育은 一般教育 보다 더 많은 努力과 創意가 要請되는 것이므로 相當 높은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이 必要하다. 즉 診斷過程에서 부터 醫學的, 社會學的, 心理學的 그리고 教育的인 側面에서 專門的인 識見이 必要하며, 이를 教育的인 措置에 適切히 活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診斷的 評價는 一回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教育的 措置 前後에 週期的으로 反復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精確한 판단이 있어야 이에 맞는 教育프로그램

램이나 方法이 動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教育資料면에서 볼때, 이것은 教育目標를 達成하기 爲한 體系화된 內容組織이지만, 教科의 性格과 學生들의 特性에 따라 教授資料는 달라야 한다. 특히 정신박약의 경우, 그 複雜性이나 系列性的 問題뿐 아니라 學習의 程度와 速度, 學生의 特殊才能이나 不能에 따라 適切히 組織되어야 한다. 예컨대 읽기 資料에서 보면, 單語가 자주 反復되어야 할뿐아니라 그들의 年齡에 맞고 興味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教授方法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教育可能 精薄이라고 하더라도 그 質性은 아주 크다. 教育方法이란 大体로 教育內容에 따라 定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一般兒의 경우보다는 具體的인 學習 場面를 設定하여야 할뿐아니라 學生들의 適性이나 學習樣式에 따라 多樣한 指導方法이 講究되어야 한다. 이들의 學習을 促進시킬 수 있는 原理를 들면 대략 아래와 같다.

1) 対象者の 能力水準에 비추어 催適한 學習經驗이 되도록 組織해야 한다. 즉 學習의 準備性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適切한 學習經驗을 提供함으로써 學習을 促進시키도록 努力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것에서 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도록 學習經驗을 系列的으로 組織하여야 하며, 対象이 실패하지 않고 成功的인 經驗을 갖도록 適當한 端緒를 주도록 해야 한다.

2) 學習에 대해서 最大의 努力을 傾注할 수 있도록 動機誘發을 하고 그것이 持續되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해야 한다.

- 3) 過剩學習이 되도록 充分히 反復練習을 하도록 해야 한다.
- 4) 이미 배운 知識이 새로운 場面에 適用될 수 있도록 積極的인 轉移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概念을 여러 學習場面에서 提示하거나 다른 概念과의 관련 속에서 다룰때 學習의 一般化가 이루어진다.
- 5) 학습시 언제나 成功的인 經驗을 갖도록 하므로써 健全한 自我概念을 形成하도록 해야 한다.

聽覺障礙者를 爲해서는 補聽器 및 聽能訓練은 勿論, 発語指導와 統性指導를 해주어야 하며, 뇌성마비와 같은 特定學習 障礙者를 爲해서는 寄宿制學校에 가는것이 合當하며 장애의 상태에 따라 實驗處置를 받아야할 경우가 많다. 대체로 腦傷害, 學習障礙 및 精薄은 混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간에 깊은 相關이 있다. 더우기, 腦傷害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重度學習行動 障礙者는 寄宿制學校에 收容할 必要가 있다.

視覺障礙者를 爲하여는 전문교사제 획이나 巡廻教師計劃을 통하여 지도하기도 하고 또는 資料室이나 資料教師計劃을 세우거나 協力學級制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勿論 特殊學校나 寄宿制學校도 必要하다 하겠다.

第4節 社会的 再活

心身障礙者들의 再活을 爲한 계반 Service로서, 医療的

再活이나 職業再活 및 教育的 써비스 以外에도 그들의 社会的, 經濟的 또는 心理的인 局面의 써비스가 要求되며, 障礙者로서 當하는 各樣 사회적 葛藤과 문제에 對한 解決을 求하고 있다. 즉 社会 經濟的 및 心理的 問題가 個人對 個人間, 家族間 또는 職場 同僚間, 師弟之間에서 浮現된다. 여러 社会-經濟的 問題中 가장 優先적인 것이 그들의 生計問題이고 그 다음이 기타의 Service로서 心理的인 問題 및 여가이용등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社会-心理的 또는 社会-經濟的 問題들은 그 要因이 매우 複雜하고 多様하여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이 要求되고 있으므로 이를 爲한 專門人力 資源이 요청된다. 이른바 障礙問題를 充分히 理解하여 그들을 相談해 주고 判別해 주며 그들에게 적절한 Service에로 轉介 (Referral Service)하거나 또는 直接 보살펴 줄 수 있는 Social Worker로서, 個別社会事業家나 集團社会事業家 (Group Worker)가 必要한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보살펴 줄 수 없는 障礙者들은 어떤 施設에 收容하여 보살펴 주어야 하고 이들에게 衣食住는 勿論, 代理父母的인 役割을 제공해야 할 必要에 至하게 된다. 障礙者들이 당하는 問題가 여러가지 있지만 대체로 아래의 表에서 보는대로 경제적 곤란, 精神的 苦痛, 保育上 곤란, 兄弟 結婚에의 阻害, 이웃으로 부터의 소외당함, 이웃에 피해를 주는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대로 시각장애 아동에게 있어서는 精

精神的 苦痛이 제일 크고, 다음이 經濟的 곤란으로서 이들을 爲한 社会-經濟的 对策이 要求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자의 경우는 精神的 고통 (48.39) 과 經濟的 곤란 (24.19) 과 함께 保育上 곤란까지 兼하여 家庭內的 養育問題까지 파급되고 있다. 지체 障礙의 경우는 精神的 苦痛이 65.24 로 매우 높고 經濟的 곤란도 (31.02) 높으며, 보육상곤란 (21.34) 뿐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소외 당함 (10.16) 또한 높은 비율을 보여서 장애중 가

<표 5> 신체장애로 인해 받는 곤란 (%)

내 용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병·허약장애
경제적 곤란	18.18	24.19	31.02	43.48
정신적 고통	39.39	48.39	65.24	39.13
보육상 곤란	9.09	20.97	21.34	21.74
형제 결혼에 지장		1.61	5.88	
이웃으로부터 소외	3.03	3.23	10.16	4.35
이웃에 피해 줌	3.03		1.60	2.17
곤란없다	48.48	29.03	18.72	21.74

자료출소: 신체장애 아동 실태조사보고, 1973 사단법인자행회

<표 6> 신체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의 요망사항(%)

요망사항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병·허약아동
치 료	33.33	62.90	49.73	80.43
진 학	39.39	29.03	44.92	15.22
수용또는요양	6.06	3.22	11.76	19.52
보장구착용	21.21	11.99	11.23	
양 자	33.03		4.22	4.35
취 업		19.35	19.25	2.17
기타없다	6.06	3.23		2.17

자료출소: 신체장애아 조사보고서, 1973, 자행회

장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병·허약 아동의 경우는 經濟的 곤란이 제일 높고(43.43), 그다음이 정신적 고통(39.13)와 保育上 곤란(21.74)의 순이다. 이로 보건데 經濟的 곤란은 의료비 부담을 제일 많이 당하는 병허약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精神的 苦痛은 肢體障礙者에게, 保育上 곤란은 병허약자에게, 이웃으로 부터의 소외는 肢體障礙者에게서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잘 보살펴줄 社會事業家가 요청되고 또한 이러한 人力을 활용해줄 시설이나 기관이 요청된다 하겠다.

장애아동을 가진 父母의 要望事項中 두드러진 면을 보면, 視覚障礙兒童의 경우는 進學(39.39), 治療(33.33), 보장구 착용(안경 21.21) 등의 순이고, 청각장애아의 경우에는 治療(62.90), 進學(29.03), 就業(19.35), 보장구 착용(11.29)의 순이며 취업 문제가 두드러지게 높다. 肢體障礙兒의 경우는 治療(49.73), 進學(44.92), 就業(19.25), 수용, 요양(11.76), 보장구 착용(11.23)의 순이다. 이들에게는 收容施設이나 보장구 제공이 特徵으로 부각되고 있다. 병·허약아동의 경우는 治療가 80.43%로서 가장 높고, 수용 또는 요양이 19.52%, 그다음이 進學(15.22)으로 역시 치료적 요구가 가장 높다 하겠다.

이상에서 언급된 제반 欲求나 問題들 채워주고 解決하기 위해서 障礙者를 진담할 機構는, 勿論 障礙者 問題專門家들이 要求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들을 直接 대해할 一線 機關(Front line)이 없다. 保健所에서는 다른 業務從事者는 많아도 再活要員은 없고, 兒童相談所는 家出兒나 부랑아 지도는 하고 있으나 障礙兒를 전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나 要員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부랑아나 家出兒를 취급하는 道中 심한 障礙兒를 発見하였을 때 마지못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만 있고 대부분 再活施設에 父母가 直接 찾아 오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한다. 障礙者 施設에도 그들의 여가이용 도구(例 遊動具)나 施設이 必要하지만 充分하나 제공하지 않고 있는 施設도 있다.

障 碍 者 의 社 会 的 再 活 せ 어 비 스 의 근 본 이 념 은 그 들 의 社 会 的 機 能 을 回 復 시 켜 주 는 것 이 라 하 겠 다 즉 自 身 의 身 体 的 条 件 에 대 한 適 応 이 나 家 庭 生 活 職 場 生 活 또 는 社 会 生 活 에 서 잘 適 応 할 수 있 도 록 하 며 또 한 社 会 面 에 서 이 들 에 게 수 용 적 인 態 度 를 보 여 行 政 的 이 나 教 育 的 으 로 처 우 해 주 는 努 力 이 라 하 겠 다 .

이 를 為 해 서 는 먼 저 障 碍 者 가 스 스 로 自 身 의 不 具 狀 態 를 認 識 하 고 이 를 지 나 치 게 비 판 하 지 않 고 새 로 운 生 의 可 能 性 을 찾 도 록 심 리 적 인 せ 어 비 스 를 제 공 해 야 하 며 또 한 이 들 의 社 会 適 応 을 돕 기 為 해 生 活 環 境 을 改 善 해 주 는 것 이 再 活 過 程 의 必 須 要 件 이 다 . 이 들 에 게 社 会 心 理 的 せ 어 비 스 를 제 공 하 려 면 心 理 学 的 또 는 社 会 社 業 的 專 門 家 의 도 움 이 必 要 하 고 社 会 로 하 여 금 障 碍 者 들 을 전 권 없 이 收 容 하 도 록 하 기 為 해 서 는 갖 가 지 社 会 活 動 을 通 한 社 会 啓 夢 이 나 法 的 및 制 度 的 장 치 가 必 要 하 다 . 즉 公 共 建 物 에 서 는 갖 가 지 障 碍 物 을 除 去 시 킨 다 거 나 公 共 交 通 施 設 에 는 그 들 의 昇 下 車 를 돕 기 為 한 장 치 를 해 주 는 등 의 것 을 法 에 명 시 하 여 도 울 수 가 있 겠 다 . 그 뿐 아 니 라 障 碍 者 의 여 가 선 용 문 제 도 重 要 한 社 会 的 再 活 의 一 部 이 다 . 社 会 集 團 事 業 을 通 한 갖 가 지 行 事 나 野 營 등 이 必 要 하 고 運 動 施 設 이 나 運 動 會 를 마 련 해 주 어 야 된 다 . 이 렇 게 할 때 그 들 의 再 活 意 欲 을 격 려 하 여 再 活 을 지 속 적 으 로 이 록 해 나 가 도 록 한 다 . 社 会 的 再 活 せ 어 비 스 의 目 的 은 障 碍 者 가 스 스 로 自 己 問 題 를 理 解 하 고 그 問 題 를 解 決 하 는 데 주 위 의 資 源

을 活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世界的으로 널리 活用되고 있는 씨어비스는 障礙者問題에 專門的으로 關여하고 있는 社會事業家를 통한 상담으로부터 그들을 障礙狀態와 程度에 맞도록 치료 또는 수용보호 施設에 配置하여 敎育 및 職業訓練과 就業은 勿論 그들의 一常生活을 잘 영위하도록 갖가지로 보살피주는 일련의 과정과 아울러 가정방문을 통한 家庭內의 心理的 問題의 해소와 家族의 協助要請 및 學校生活에의 適應을 도와주는 제반 씨어비스가 포함되어 갖가지 계절적인 집 단치료와 여가활동이 포함되고 보장구의 재교부 알선등도 社會사업가의 역할로 重要時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各施設에서도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利用하여 캠프씨어비스나 運動會를 개최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第 5 節 障礙豫防 事業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障礙者 問題도 豫防할 수 있고 또한 豫防이 重要하다. 한번 發生하면, 自身이나 그가 속한 家庭은 勿論 이웃이나 一般社會에 까지 心理的으로나 經濟的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發生된 障礙問題를 처리하는 것보다 豫防이 더욱 重要하고 經濟上으로도 보다 有益하다고 본다. 豫防醫學的 活動의 強化는 各種 疾病으로 부터 오는 障礙의 發生을 미연에 防止하게 되며 夫婦의 遺傳學的 相談은 染色的

의 異常이나 血液型의 不調和로 올 수 있는 各種障礙의 發生을 예방한다. 그 뿐만아니라 임신부에 對한 徹底한 産婦人科的 서비스를 줄 수 있는 母子保健法의 強化로 新生兒의 障礙發生을 예방할 수 있다. 예로 임신부가 出産前에 음주를 한다던지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던지 할때에는 장애아의 出生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性病등에 감염되었을 때는 분만시에 특별한 注意가 요청된다. 매독균이 新生兒의 눈에 감염되어 盲人이 되는 수가 있다. 또한 各種 公害로 오는 大氣오염이나 水質汚染의 예방이나 産業災害의 豫防도 重要하다. 최근에는 交通事故로 因한 障礙率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事故豫防의 重要性을 절감케 하고 있다.

第6節 우리나라의 大體的 現況

心身障礙者의 福祉事業과 관련된 法律이나 官署를 살펴보면,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 社會福祉事業法, 産業災害補償法, 援護對象者 職業再活法 및 그 雇傭法 그리고 特殊教育 진흥법등에 따라 보사부가 이들의 生計援助와 一般施設의 서비스를 관장하고, 勞働庁은 産災로 因한 障礙者의 再活을 맡고 援護處는 상이군경이나 기타 국가유공 원호대상자의 治療 및 職業再活을 맡고 있으며, 交通部는 特殊教育에의 支援를 맡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各部處에서 分担하고 있는 障礙者事業을 爲한 專担局이나 課가 設置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문제들 專門的으

로 다룰 수 있는 專門職 公務員制 (例: 日本의 후생직 공무원제 등)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家庭兒童局 內에 障礙兒 福祉課가 있고 成人障礙者일 경우에는 社会局內에 障礙者福祉課가 있어 障礙者의 福祉事業을 計劃하고 支援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保社部의 兒童課나 社会課에 障礙者를 전담하는 係程度도 없고 다른 業務와 섞인 一部內容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障礙者福祉 서비스는 治療, 敎育, 職業訓練 및 就業, 扶助 等 多方面의 서비스가 各部處의 고유업무에 따라 제공될 수 있으므로 政府行政機關간의 調整業務가 必要하고 總理室이나 기획원 등에 조정연구부서가 있어야 하겠다. 英國에서는 障礙者福祉를 전담하는 부처가 따로 설치될 정도로 政策的인 配慮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現在 成人障礙者 施設로는 35개 정도가 있고 수용 能力은 5,100名 정도가 된다. 시설명으로는 서울에 천애재활원, 盲人대린원, 신아원, 우정원이 있고 부산에 자혜정신요양원, 영락정신요양원, 그리스도 구원, 정신불구원 자매여숙, 정신불구원, 햇빛요양원, 새희망 요양원, 양지불구자 기술원 등이 있고, 경기도에는 박애원과 명휘원이 있고, 충북에 청산원, 영생원, 부활원이 있고, 충남에 계룡정심원, 신생원, 심경장원이 있고, 전북에는 전북농아원, 성일정신요양원,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있고 전남에는 애충원과 귀일원이 있고, 경북에는 청구혜양원, 대구안식원, 성모자애 불구원, 그리스도 구원선

정신환자, 구호원, 정부정신수양원, 춘광대구요양원, 안동재활원등이 있고 경남에 김해정신요양원과 마산정신요양원이 있으며 부산에 양지불구자, 기술원과 경기도에 명취원이 있다. 종사자 현황을 보면 대체로 시설장 1인, 총무 1인, 사무원 1~2명, 의사는 없는 곳이 다수이고, 간호원 2~3명, 보조 5~6명 정도로 대체로 소규모적인 시설이고, 收容人員에 비해 임원이 모자라고 자격을 갖춘 종사원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성인복지 시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1. 運営費 및 人件費 支給에 관한件 :

(1) 成人福祉施設에 支給되는 운영비 내용을 보면 장애시설이 225,200 원인바 이중에서 총무원건비, 간호원 또는 보조인 건비를 제하면 실제시설 운영비로 쓸수있는 금액은 43,700 원 이 액수로는

- ① 시설 稼理費 월 15,000 원
- ② 구급약품대 1인 월 200 원
- ③ 연료비 부족금 부담액 : 1인 1월 71,03 원
- ④ 주식비 부족금 부담액 : 1인 1월 33 원
- ⑤ 제공과금, 월평균 최저 10,000 원 - 20,000 원
- ⑥ 기타장비, 월평균 최저 10,000 - 20,000 원

계 201,045 - 267,045 원으로서

현재 보조되고 있는 금액은 실제 자체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의 1/8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건비 만이라도 전액보조를 해주던가 아동장애시설에 준하는 보조를 해줄것.

- (2) 자체의 추가부담액과 보조금을 합산하여 개인별 월소요액을 환산하면 지방이 월 17,778원, 서울이 18,498원 인데 월생활비 200,000원 미만으로서는 최저생활이 어려움으로 자체에서 추가 부담금액을 전액보조하여 최저 25,000원 선은 되도록 건의함.

- (3) 현재 각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무자격 종사자들의 교육 실시 및 유자격자로의 교체가 현재의 급료로는 불가능하며 시설장에게도 최저 20만원선의 급료지원을 요청함.

- (4) 79년도 사회복지시설지원 지침서를 보면 아동장애 시설과 성인장애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에 차가 있으니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2. 시약대 및 구료비건

- (1) 구료비는 장애시설에 의료개설 허가를 받은 시설이 많아 자체에서 치료키 위하여 정부가 구료비를 지원하여 주었던것이 의료시혜로 전액 削除되었으므로 분계점은 정신환자가 67%이상, 지체장애, 정신박약, 盲兒, 농아, 간질등의 장애인 임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려면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여 이로써 3,000 ~ 5,000원 정도의 거마비가 지출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됨

- (3) 장애시설 구료비를 1인 월 2,000원으로 현실화 하여 시설 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것.

3. 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전

- (1) 각시설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애매한 투고로 인하여 실시되는 감사 시설의 지도육성을 위하기보다는 지적을 위한 감사, 종사자들에 대한 罪人 취급시 되는 감사등으로 치우치는등 임관성 없이 수시로 실시되는 감사로 인하여 시설운영이 감사를 위한 운영이 되기쉬운 실정에 있다.

4. 양곡 및 생계비 지급에 관한것

- (1) 양곡 및 생계비 지급에 있어 지역적 사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1일 전까지는 시설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거의 전시설이 집행일을 훨씬 지나거나 심지어는 집행월이 다 지난뒤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축미불 지급해 줄것.

5. 장의비보조틀 6만원 선으로 인상할것.

6. 불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유료수용자들에 대한 의료비 참조에 있어 현재 당국에서 지시한 2만원을 모든 불가에 비추

어 볼때 현실과 너무 등떨어진 금액임. 현재 가장 低廉하게 받고 있는 국립정신병원 입원비도 극빈자가 1일 1,600원 일때 일반 사회병원의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입원시설이나 그 시설의 규모나 수준이 대동소이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시설의 절반도 안되는 의료비로서는 그 목적을 다할 수 없는 실정임. 현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도 입원비 및 치료에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료수가로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있는 이들의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현 숫가를 100% 이상 인상해 줄것을 요망함.

이상 몇가지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주실것을 건의하오니 사회복지 구현을 위하여 현실적인 조치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1979. 3

사단법인 한국 사회복지 시설협회

이상의 건의를 음미할때, 아동시설과 성인 시설간의 보조상 차이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계비목에서 성인이 아동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할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사부 아동과가 제시하고 있는 保護施設에 收容中인 心身 障礙兒童 保護對策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I. 目 的

不遇한 心身障礙兒童의 生計를 保障하는 한편 障礙回復을 위한 治療와 職業訓練을 強化하여 이들을 生産的 人力으로 轉換시켜 社會에 復歸시키므로 能力에 따라 알맞는 社會生活을 營為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明朗한 社會氣風을 圖謀한다.

II. 障礙兒童의 施設保護實態

障 碍 種 別	保護施設數	保護兒童數
肢體不自由兒	15	1,562
精神薄弱兒	19	1,768
盲 兒	8	464
聾 啞 兒	10	661
계	52 個 所	4,455 명

III. 對 策

基 本 方 向

첫째 : 保護施設에 收容중인 障礙兒童에 대하여 營養給食 등 生計保護水準을 向上하는 한편

둘째 : 이들에게 再活治療 및 適性에 알맞는 職業訓練을 強化하여 社會에 復歸토록 하고,
셋째 : 長期對策을 위하여 正確한 障礙者 實態調査를 實施 綜合
적인 障礙者 保護對策을 樹立하고자 함.

實 施 方 案

1. 生計保護水準의 向上

가. 營養給食實施

一般 不遇兒童保護 施設에 있는 收容兒童과는 別途로 障礙兒童에 대하여는 障礙回復을 위한 營養給食이 必要하므로 다음과 같이 營養給食制度를 實施토록 한다.

- 營養給食 對象者 : 保護施設에 收容中인 障礙兒童

4,322名(全 員)

- 營養給食 : 粉乳(牛乳)

- 支給基準 : 1人1日 80g(160원 상당)

- 所要豫算(年間) : 252,404千원

나. 糧穀比率의 調整

- 現在 政府에서 支援하고 있는 1人1日 白米 2合, 糧麥 2合을 施設收容保護者에 대한 政府의 糧穀支給 政策變化에 關聯하여 白米 3合, 精麥 1合으로 糧穀支援 比率를 調整토록 한다.

- 追加所要豫算(年間) : 30,384 千圓

※ (調整内訳)

区 分	現 支 援	調 整
計	564 号 (4 合)	570 号 (4 合)
白 米	288 号 (2 合)	432 号 (3 合)
精 麦	276 号 (2 合)	138 号 (1 合)

2. 再活治療 및 職業訓練強化(社会復帰)

가. 再活治療 및 職業訓練施設の 拡充

- 49 個 障礙児施設中 物理治療施設, 作業治療施設, 言語治療施設 및 職業訓練施設이 未備된 保護施設에 必要한 施設 및 裝備를 補強하여 一定한 水準의 再活治療와 職業訓練을 実施하도록 한다.

< 표 7 > 障礙兒童 施設支援 基準

事業別	対象	支援内訳(施設当)
物理治療	13個 施設中 10個 施設	○ 建物：50坪(10百万원) ○ 装備：水治療器 外 20種(20百万원)
作業治療	49個 施設中 18個 施設	○ 建物：50坪(10百万원) ○ 装備：手織機 外 20種(10百万원)
言語治療	聴啞施設 10個所	聴覚訓練器 外 5種(10百万원)
職業訓練	49個 施設中 38個 施設	○ 建物：100坪(20百万원) ○ 装備：2個職種用 (30百万원)

자료：보사부 아동과 현황보고

障 碍 児 童 에 대 한 職 業 訓 練 은 障 碍 状 態 에 따 라 必 要 한 職 種 을 実 施 하 되 肢 體 不 自 由 児 인 경 우 에 는 木 工 , 印 刷 , 糊 物 , 용 접 , 電 子 職 種 등 을 , 弱 視 인 경 우 에 는 木 工 , 製 靴 , 機 械 , 旋 盤 , 용 접 직 종 등 을 精 神 弱 児 인 경 우 에 는 세 멘 트 브 록 工 芸 , 縫 製 등 職 種 을 爲 主 로 既 存 保 護 施 設 에 간 이 시 설 을 設 置 함 .

○ 施 設 拡 充 計 劃

上 記 施 設 拡 充 에 必 要 한 所 要 額 은 總 2,660,000 千 원 으 로 서 一 時 支 援 이 困 難 하 므 로 施 設 拡 充 은 年 次 的 으 로 計 劃 을 獨 立 実 施 토 록 한 다 .

< 表 - 8 > 障 碍 児 童 施 設 拡 充 計 劃

施 設 種 別	年 度 別 事 業 量 (個 所)				소 요 예 산 (百 万 원)			
	계	79	80	81 이후	계	79	80	81 이후
計	76	12	10	48	2,660	420	560	1,680
物 理 治 療 施 設	10	2	2	6	300	60	60	180
作 業 治 療 施 設	18	2	4	12	360	40	80	240
言 語 治 療 施 設	10	2	2	6	100	20	20	60
職 業 訓 練 施 設	38	6	8	24	1,900	300	400	1,200

자 료 : 보 사 부 아 동 과 계 획 자 료 1979

나. 補裝 및 裝直費 支援

障兒童中 肢體不自由兒 및 視聽覺障兒童의 경우에는 基本活動을 補助할 수 있는 補裝具가 必要하므로 다음과 같이 補裝具를 支給토록 한다.

- 補裝具支給對象：保護施設에 收容中인 障兒童 4,322 名中 補裝具가 必要한 肢體不自由兒 및 視聽覺 障兒 2,300 名 (30 %)
- 支給基準：1 人當 50,000 圓 (補裝具代)
- 所要豫算：65,000 千圓

다. 專門職員의 確保

○ 報酬水準을 現實化하여 欠員을 補完하고 資格証을 所持한 專門職員을 確保하므로써 內實있는 再活 및 職業訓練을 實施토록 한다.

○ 処遇改善基準：아래의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養護職, 医療職 및 教導職으로 区分하여 現給与額の 1.5 倍정도 인상지급 하는 것을 내용하는 처우개선을 단행하여 의사의 경우 37 만에서 54 만으로 올렸다.

< 表 - 9 > 障碍者 施設要員 処遇改善 基準

職 種		現行人／月	改 善 (案)	
			金額 (人／月)	適 用 基 準
養 護 職	보 모 營 養 士	35,000	62,000	常用 雜給 3 種
		51,000	87,000	" 7 種 4 甲
医 療 職	医 師	378,000	546,000	常用雜給 7 種 1 級
	藥 師	86,000	118,000	常用雜給 7 種 3 乙
	看 護 員	75,000	87,000	" 4 甲
	物理治療士	109,000	118,000	" 3 乙
教 導 職	指 導 教 師	93,000	118,000	" 特種 3 乙
	職 業 轉 導	73,000	118,000	" "
	教 師			

3. 障碍者에 대한 長期福祉对策樹立

가. 実態調査 実施

全体 心身障碍者에 대한 長期綜合福祉对策을 爲하여 正確한 実態把握이 必要하므로 다음과 같이 障碍者 実態調査를 実施토록

한다.

- 調査対象：全国の 心身障碍者
- 実施時期：1979 年
- 方 法：専門機関에 依한 標本調査
- 所要豫算：50,000 千원

나. 綜合保護制度 樹立

1) 障碍者 保護制度 樹立을 為한 專擔機構 設置

- 保健社会部에 障碍者 福祉專擔機構 新設
- 国立党心学院에 研究 및 訓練機關併設
 - 一 障碍種別로 施設을 併設하여 障碍兒童을 收容保護하는 한편,
 - 一 障碍者の 再活 및 指導方法등을 調査研究토록 하며,
 - 一 各種 障碍施設 從事者の 実習 및 訓練實施로 専門要員을 養成토록 한다.

2) 制度補完

障碍者保護와 關聯하여 關係專門家로 하여금 制度的 補完策을 研究토록 한다.

以上の 것은 障碍兒童施設을 為한 보강策으로서 종전보다는 다소 改善된 것이지만 아직도 現實化하기에는 充分치 못하고 特히 施設 收容兒에게만 対策을 세우고 있어서 在家障碍者 対策이 따로 마련

되어야 할 必要를 느끼게 하고 있다.

한편 연세의료원 부속 再活院의 全国 心身障礙者 福祉施設實態調査(75年)에 나타난 바에 依하면 當時 58個 施設에 6,415名의 收容者들을 爲해 일하는 職員이 1,096名인데, 이중 再活專門要員은 全體 職員數의 .6%로도 未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나라 心身障礙者 福祉事業의 水準은 收容保護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政府의 豫算投入이 每年 늘어감에 따라 80년에 들어가면 보다 專門的 心身障礙者 福祉事業이 이루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의 豫算投入 增加추세를 보면 70년도 保健社會部 兒童課의 心身障礙兒 福祉施設 補助豫算은 2,100萬원 이었던 것이 75年度에는 거의 500%가 上昇된 9,600萬원인 것을 보면 政府의 보조예산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政府豫算의 增額은 그만큼 心身障礙者 福祉의 必要性이 社會적으로 增加되고 있다는 것을 証明하는 일도 되겠다. 따라서 보다 合理的이고 效率적인 心身障礙者 福祉를 實現시키기 爲해서 다음의 몇가지 過程의 現況을 검토하면서 대책도 아울러 모색해야 할 것이다.

障礙者 實數의 파악이 첫째 문제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障礙者의 數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되

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全人口 規模로 障礙者 實態調査를 實施할 必要가 있다. 1979년에 兒童만을 조사하고 있으나 成人까지 포함되는 조사가 必要하고 가능하다면 Census에 포함시킬 必要가 있다. 외국에서는 3세에 일제 점검을 한다.

둘째로, 障礙者의 登錄制가 必要하다. 発見된 障礙者를 登錄시켜서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여러모로 편리하겠다. 保健所나 兒童相談所等を 活用하는 方法도 좋을 것이고 이러한 機關에는 専門要員을 배치하여 각종상당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Network이 마련되어야겠다.

셋째는, 障礙의 評價조치가 있어야 한다. 障礙者의 障礙程度를 科学的으로 評價받아 각자에게 適合한 서비스로 안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医療, 敎育, 職業, 心理等の 専門要員이 Team을 이루어 평가에 임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즉 각 障礙者의 程度와 狀態 및 職業適性등이 고려되어 再活可能性을 綜合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복지기관에의 의뢰, 치료나 보장구의 재교부, 職業訓練 또는 就業으로의 앞전이 이루어져야겠다. 현재는 이러한 評價센타가 없으므로 각 再活機關에서 直接 하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는 再活 및 措置단계이다.

障礙者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그들의 当面 欲求를 따라 醫療的, 職業的, 教育的 및 社会的인 治療나 措置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障礙者의 全人的 福祉를 爲해서는 각종 서비스가 調整되고 統合되어야 한다. 外國에서는 再活相談家가 있어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社會事業家에게 再活教育이나 訓練을 시켜서 각 保健所나 相談所에 배치하여 이러한 일을 시킬수가 있다. 再活事業은 병원, 再活院, 福祉施設 및 一般 職業訓練施設을 각기 活用하여 할 수 있다. 또는 全國을 大地域別로 分割하여 綜合再活院을 設置할 수도 있다. 예컨대, 全國을 수도권, 강원지역, 충청지역, 호남, 영남, 제주 및 도서지역 등으로 분할하여 綜合再活施設을 設置할 수 있겠다. 이 綜合施設에는 治療를 爲始하여 教育, 職業訓練 및 就業알선, 상담 및 의뢰 서비스, 평가등 모든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Colony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綜合再活院은 國立이나 道市立으로 하여 政府가 直接運營할 수도 있고 經驗있는 民間에게 設置後 위임하여 政府가 보존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 또한 國家에서 모든 費用을 전부담하는 것보다는 利用者들이 可能的 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社会福歸 단계가 必要하다.

이것은 障礙者福祉의 最終目標로서 障礙者로 하여금 家庭이나 職場에서 또는 一般 社会에서 잘 適應해 살수 있도록 갖 가지로 도와주는 일이라 하겠다. 이를 爲해서는 이러한 일을 專担해서 Rollowup Service를 제공할 최소한의 Social Worker가 必要하고 이들은 장애자의 家族은 勿論, 學校, 職場上師 等を 수시로 接堅하여 障礙者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서 유의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즉 社会的 片見의 해소와 物理的 障礙物을 除去와 同時에 障礙者에게 對한 社会的 認識을 보다 肯定的으로 轉換시켜 나가는데 政府의 政策的 配慮가 있어야 하고 本人과 福祉機關의 共同 努力이 요 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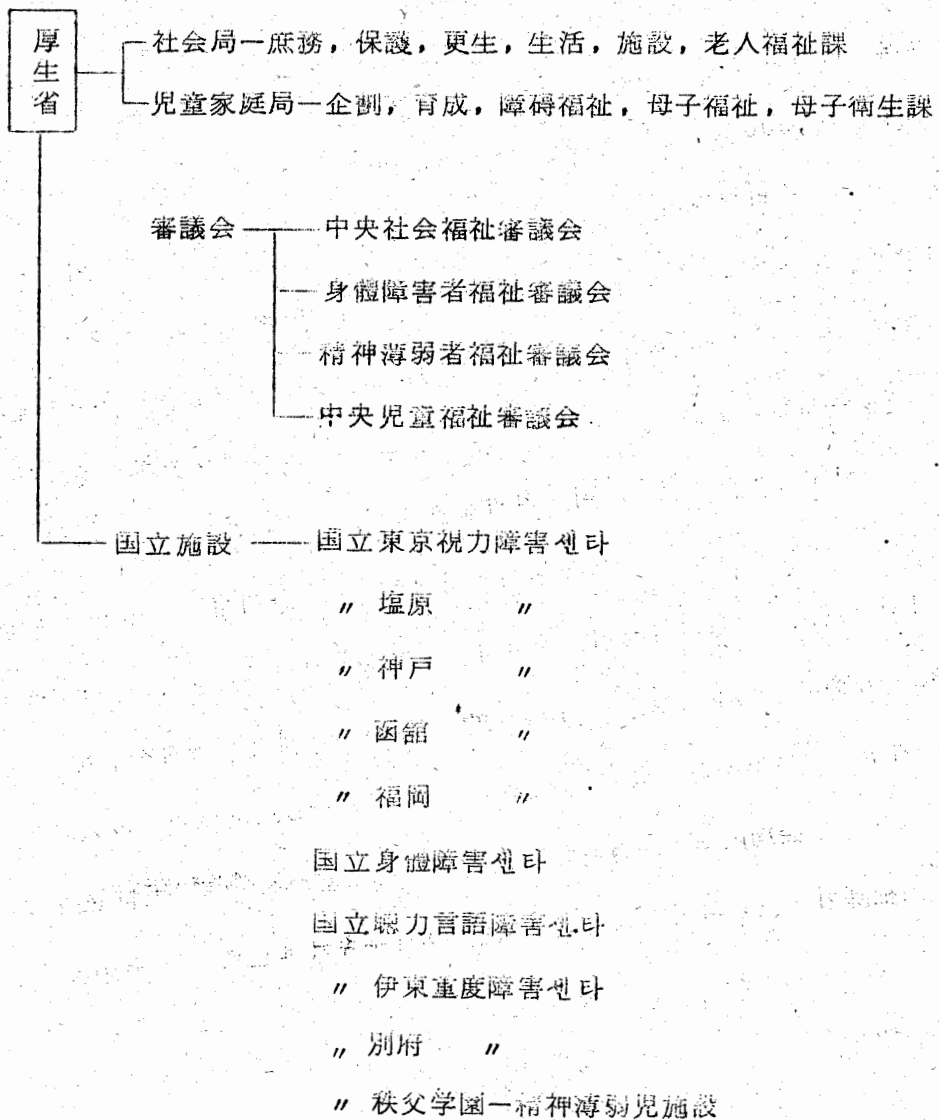
또한 障礙者를 爲한 住宅, 稅制, 交通, 雇傭, 金融, 免許, 生計에 對한 政策的 配慮는 이들이 社会復歸에 必要한 條件이 되고 있음 을 주지의 사실이다. 外國에서는 盲人扶助나 기타 障礙者를 위한 生計扶助가 있어서 基本的인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生活保護事業의 一部로 障礙者中 영세민이나 生保對象(극빈자)에게 一定한 生計費 보조를 하고 있으나 主로 食生活보조나 상장조치로

끝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에 언급한 제반 조치에서 여러면으로 미흡하고
백지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81年이 世界障
者의 해인만큼 이를 계기로 하여 획기적인 조치가 계획되어야
겠다. 가까운 이웃 日本의 경우 身體障者를 爲한 施設數가 74
年度에 284개소가 있고 成人身體障者 시설은 322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 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能力은 아동시
설들이 26,500명, 成人施設들이 15,000명, 도합 41,500명이 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78年末 現在 신체장애아 시설이 33
개시설에 불과하고 이들의 收容能力은 약 3,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치료, 교육, 訓練 設備의 미비로
再活 프로그램을 展開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서비스의 취약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
가 있다. 日本의 경우 1949년에 신체장애자 복지법을 제정 실시
했고 1960년부터 정신박약자 복지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으며 70년
도에 心身障者 基本对策法을 制定하여 장애인 재활 복지사업에 확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政府内の 專担行政府署로서 成人障
者의 경우 社会局内に 更生과가 있고 障者를 爲하여 兒童局內
에 障者福祉課가 設置되어 있다. 또한 厚生부속기관으로 身體障

者 福祉審議会가 設置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 保健社
 会部内에 身體障礙者 福祉問題를 전담하는 부서가 전혀없는 실정이다.

<표 - 10> 日本의 社会福祉關係 組織表



한편, 最近保社部가 調査한 施設의 職員現況을 보면 各施設別 職員의 數는 2名 以下가 總195個 調査대상 시설중 7.7%인 15個 施設이며 3名에서 5名은 33.3%인 65個 施設, 6名에서 10名은 27.7%로 54個 施設, 11名 以上은 31.3%를 차지한 61個 施設로 되어 있다. 2名 以下の 職員을 둔 小規模施設은 主로 成人不具施設에 많아 施設間의 隔差가 甚한 것으로 判斷된다. 또한 成人不具施設中에는 無認可施設로서 法人設立를 하고 싶지 않다가 4個 施設로 나타나 있다. 그 理由는 宗教財團으로 編入 認可 豫定이기 때문에 2個 施設로 나타나 있다. 法人設立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다가 13個 施設로 그중 基本財産의 不足 및 設立 許可基準未達 때문이 11個 施設로 나타나 있다. 法人 設立을 하고자 하는 施設은 36.7%인 11個 施設이다.

以上の 資料에서 보여진 바대로 成人不具施設中 많은 施設이 未認可이고 보면 이들을 적절히 지도하고 統合하여 양성화 하던지역은 現實에 맞지 않은 제반 施設基準을 設定하여 未認可中 상당부분이 구제를 받게 하던지 하는 획기적인 政策的 배려가 要望된다 하겠다. 特히 고질적인 精神病者(만성정신병자)를 爲한 收容施設의 양성화가 必要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政府가 直接 實施하고 있는 障礙者 福祉事業中國立覺心學院은 가장 알려진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이다. 이 施設은 1949.5.6 大統領令 第94号로 中央覺心學院의 職制가 公布됨으로

서 收容人員 21名으로 開設되었고 1950.12.28 서울 氷登浦區
樣平洞에서 6.25 動亂으로 巨濟島로 移轉하였다. 1952.3.1에는
釜山 大 洞으로 移轉하고 1956. 1.25日에 서울 氷登浦區 九老洞
前 幸福山 育兒院으로 移轉하였다. 1960.8.12 國務院令 第46号
로 國立覺心學院으로 職制를 改正하고 67.12.11日에 서울 道峰區
牛유동 520現在の 場所로 移轉하였고 1977.3 國立覺心學院職制를
改正하여 別定職를 大幅 增員하였다. 精神薄弱兒의 知能啓發에
必要한 養護 및 教導를 任務로 하고 있는 이 施設의 指導目標은

- 1) 基礎的 生活의 能力向上 指導
- 2) 心身障礙者의 機能回復을 위한 矯正
- 3) 學習指導와 職業輔導教育으로 自立能力 啓發
- 4) 社會復歸實現을 위한 社會生活의 適應性 指導 等이다. 이
施設의 機構 및 定員을 보면 院長 밑에 醫務室을 두고 庶務課,
教導課, 判別施療課 等を 두고 別正職 10名, 3級 3名, 4級 6
名, 5級 3名, 技能級 2名 雇傭員 4名, 雜給 16名等 44名을 두고
있다. 歲出豫算은 1979年度 豫算額이 192,071,000원 인바, 行政
支援費 57.5%, 養護教導費 42.5%로 構成되어 있고 行政支援費
를 細分하면 施設 및 裝備維持費가 13.8% (15,241千원) 人件
費 79.0% (87,683千원), 其他 7.2% (8,029千원) 計 110,953
千원으로 되어 있다. 養護教導費는 81,118千원으로서 教育費
2.4% 醫療費 6.9% 被服寢具 및 燃料費 15.0%, 給糧費 70.7
% 其他 5.0%로 되어 있다. 給糧費로는 1日 1人當 523,20원을

基準으로 하고 主食費 229.47 (日米 439 ㄱ 精麥 207 ㄱ) 副食費 265.86 원 燃料費 27.91 원으로 되어 있다.

歲入豫算으로는 雜收入豫算額: 12,000,000 원으로서 入院費: (月 10,000 원) 通院料 月 3,000 원으로 되어 있다. 이 施設의 財産 現況을 보면 土地가 14,586 坪인바 이중 敷地가 4,275 坪이고, 林野가 6,649 坪, 河川敷地가 3,662 坪이다. 建物은 910,47 坪이며 이중 物理治療 및 X線室 48 坪, 教室 313 坪, 宿舍 281.22 坪, 基他 268.25 坪으로 되어 있다.

院児는 總員 224 名으로 男 128, 女 96 名이다. 年令別로 보면 9 歲가 7 名, 10 歲가 20 名, 11 歲 12 名, 12 歲가 24 名, 13 歲가 19 名, 14 歲가 17 名, 15 歲 29 名, 16 歲 30 名, 17 歲 19 名, 18 歲 20 名으로 15~16 歲가 가장 많다. 19 歲이상도 27 名이나 되어 연장아의 처리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院児出身道別을 보면, 서울이 71 名, 경기 36, 충북 15, 충남 12, 경북 13, 경남 13, 전북 12, 전남 9, 강원 9, 부산 2, 이상 32 로 되어 있다. 院児의 指導는 保護班, 生活班, 學習班, 自活指導班으로 區別하여, 保護班이나 生活班은 知能이 낮아 身邊處理나 學習을 못하는 兒童을 보살펴주고 教育 可能的 兒童들은 學習班에 두고, 生活班, 學習班을 거친 兒童과 그밖의 作業能力이 있는 兒童을 自活指導班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狀態를 区分해 보면 總 224 名中 白痴 (25 以下) 가 2 名, 痴愚 (IQ 26-50) 이 169 名 愚鈍 (51-70) 이 50 名, 境界線 (71-80) 이 3 名으로 되어 있

다. 또한 障礙別로 보면 肢体, 言語 및 聴覺障礙兒童이 139 名이
나 되며 이를 細分해 보면 上肢 3 名, 下肢 7 名, 上下肢 26 名, 전혀
듣지 못하는 아이가 1 名, 약간 들음 3, 병 어리 20, 반병 어리 30,
말더듬 28, 視覺障礙로 近視 5 名, 斜視 13, 弱視 4 名으로 되어 있고,
矯正可能兒童은 60 여명으로 肢体矯正 35, 言語矯正 25 정도가 된
다. 精神障礙兒童으로는 精神分裂이 23 名, 간질이 33 名, 異食疾
22 名, 不眠症 17 名 도합 95 名이나 된다. 合併症兒童의 狀態를
보면 2 重이 90 名, 3 重이 31 名, 4 重이 10, 5 重이 8 名, 순수
박약 85 名이다.

入院間別로 보면 1 年未滿이 54 名, 1 年 7 名, 2 年 30, 3
年 29, 4 年 31, 5 年 30, 6 年 19, 7 年 4, 8 年 4, 9 年
1, 10 年 3, 11 年 以上 12 로서 2 年에서 5 年사이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精神薄弱의 原因別 分析을 보면 出生後가 54 %, 先天的이 33 %
出生時 13 %이다. 先天的인 것으로는 小頭 및 기형, 내분비障礙
先天매독, 胎內障礙, 疾의 遺傳등이 있고 出生時 原因으로는 頭部損傷
및 分娩障礙가 있으며, 出生後 原因으로는 腦膜炎, 中枢神經障礙,
伝染病, 熱病, 頭部外傷, 各種公害 등이 있다. 年度別 院兒動態를
보면 相談者가 77 年에 242, 78 年에 497 名이고 入院者가 77 年
에 45 名 78 年에 72 名이며 退院者는 77 年에 40 명, 78 年에 68
名이다. 原因別 退職狀況을 보면 49 年에서 78 年까지 就業 50 名
轉院 172 名, 徵兵 10 名, 家 309 名, 死亡 113 名, 其他 265

名으로 死亡이 매우 많게 나타나고 있다. 治療実績을 보면, 1978年の 경우 消化器系統이 1千건, 呼吸器系統이 1千7百件, 耳鼻咽喉과가 1千7百件, 皮膚과 3千2百件, 비뇨기과 2건, 眼科 1千4百件, 치과 36건, 精神神經科・만전・外科 6千2百件등으로 정신신경과와 外科가 두드러지게 많고 그 다음은 皮膚과이다. 言語 교정실적은 연인원 3,589名이고 物理治療実績으로는 연인원이 10,912名으로 이중 水治療 2,154名, 器具治療 5,974, 運動療法이 2,784名으로 되어 있다. 1978年度 주요사업실적으로는 전국정박아 시설종사자 연수회를 비롯하여 研究報告書發行, 院生 全体 知能檢査 및 社会性熟度檢査, 院内教育 및 行事 등이 있고 79年度 事業計劃으로는 精神薄弱兒父母 研修計劃 1件, 精神薄弱兒收容施設보모 研修計劃 1件, 行動修正, 百 兒 言語訓練 自助模倣訓練, 教育過程等에 関한 研究計劃, 研究集發刊, 구기대회 학예회, 体育大会 교외학습등 行事計劃을 갖고 있다.

以上에서 밝혀진 国立覺心学院의 운영 실태에서 밝혀진 바는 教育可能級 兒童들이 相当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特殊學校 過程을 정식으로 設置하지 못하고 있는 問題点이라 하겠다. 또한 国立施設의 規模로서는 施設이 다소 未備한 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事務室이나 教室 및 숙사에 이르기까지 보다 近代的이고 文化的인 施設로 단장은 것이 바람직하고 보모도 현재 30名 兒動에 1人을 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名에 1名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日本の 경우 身体障碍者 施設에 收容된 者들의 1人当 月額經費를 보면 1969年度에 21千원내지 27千원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의 경우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신박약아 원호시설만해도 日間 24,400 원을 (일화) 지출하고 있다.

〔表- 11〕 日本の 社会福祉施設收容者 1人当 月額經費

施 設 種 別	1968(원)	1969(원)
身体障害者更生援護施設関係		
肢体不自由者, 失明者, 聋아자更生施設	19,045	21,380
身体障碍者授産施設	15,272	18,524
重度身体障碍者更生援護施設	25,493	29,425
重度身体障碍者收容授産施設	22,884	25,031
内部障碍者更生施設	18,745	21,210
精神薄弱児施設	24,813	27,923
盲児施設	23,870	26,619
聋아施設	21,990	25,015
肢体不自由児施設	22,780	23,569

資料：新社会福祉行政

盲人들을 위한 団体中에는 社会福祉法人 韓国視覚障碍者 福祉社가 全国의 盲人事業에 関한 協議機能을 맡고 있다.

이 會의 目的은 모든 視覚障碍者들이 社会의 일원으로서의 正當한 地位와 權益을 차지할 수 있도록 社会的, 教育的, 医学的, 文化的 職業的으로 도와 줌으로서 그들이 障碍를 극복한 再活의 기쁨을 안고 社会에 復歸하여 幸福한 生活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한다. 1940년에 반도맹인연합회로 始作한 以来 1945년에 大韓盲人協會로 發展하고 1957년에는 사단법인 韓国盲人福祉協會로 되었고 1961년에 韓国社会福祉聯合會 盲人福祉委員會로, 1973년에는 社会福祉法人 韓国視覚障碍者福祉會로 改名하였다.

이들이 하는 事業으로는 視覚障碍者에 関한 調査研究, 점자도서, 녹음도서 점자신문의 發刊, 生活用具의 開發과 제작보급, 視覚障碍者에 대한 相談, 職業再活事業, 專門職, 指導者 養成, 失明豫防 및 視力保存事業, 國際盲人機構와의 連絡 제휴. 盲人福祉事業 機關支援 등이 있다. 同法人의 기구조직을 보면 理社会 밑에 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고 會長, 副會長, 常務理事가 있고, 점자신문부, 점자도서부, 총부부, 生活用具部 相談部 등을 두고 있다. 後援會에는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慈善奉仕団体, 經濟人団体, 宗教団体, 各種學校, 기타 일반인이 있다. 자문위원회로는 福祉分野, 教育分野, 職業分野, 医療分野, 文化分野, 国内分野, 國際分野 등이 있다.

財産으로는 전담임야가 130,629평이고 보통재산으로는 점자제판

기 印刷機, 한글점자타자기, 사무용집기 일체가 있다. 이들이 하고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온 事業実績을 보면 全國盲人을 조직한 것 이외로, 盲人의 權益과 社会的 地位 向上을 爲한 活動을 위시하여 주간점자신문 발행, 점자도서 제작 및 대출, 盲人生活用具 開發 및 보급, 世界盲人福祉協議會 正會員國으로 加入, 盲人 및 身體障礙者 國際會議에 代表團參加, 世界協議會 아세아 위원회의 技術交流協定, 盲人事業의 社會化運動, 相談事業 등을 해왔다.

이들이 밝힌 全國盲人界 現況을 보면 1975年度 現在로 盲人 人口가 서울 11,715명 釜山 4,343, 경기 9,236, 강원 5,401 忠北 4,606, 忠南 8,497, 全北 7,526, 全南 11,726, 慶北 12,958, 慶南 9,127, 濟州 982, 合計 86,117名이며 盲人學校는 서울 2개, 부산 1, 강원 1, 충북 2, 충남 1, 경기 1, 전북 1, 전남 2, 경북 1, 경남 무, 제주 1, 合計 13개이며 盲人후생시설로는 서울 4, 부산 1, 경기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도합 11개소이며 職業團體로는 서울에 2개가 전부이고 盲人敎會가 서울에 2곳이 있고 盲人部落이 서울에 1, 경기 1, 강원 1, 충남 1, 도합 4개소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表 - 12] 전국맹인 학교 일람표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자
서울맹 학교	종로구신교동	심 경 섭
임마누엘여맹 학교	서울도봉구수유동	한 신 경
경기맹 학교	인천시북구심정동	임 경 삼
강원맹 학교	춘천시우도동	박 승 명
청주맹 학교	충북청주시탑동	우 경 천
충주성심맹인 학교	충주시지현동	이 중 배
대전맹 학교	대전시자양동	임 병 희
전북맹 학교	이리시남중동	권 태 용
목포맹 학교	목포시유달동	박 춘 식
전남맹 학교	광주시학3동	이 순 익
대구광명 학교	대구시대명동	박 영 생
부산맹 학교	부산시서구남부민동	박 영 환
제주맹 학교	제주시2도2동	박 성 훈

[表 - 13] 전국맹인후생시설 및 직업단체 일람표

1976 년 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울맹인대련원	서울도봉구상제동 1117	김 원 제
임마누엘여맹원	서울도봉구수유동 484-21	한 신 경
한국맹인재활센터	서울성동구성내동 136	조 중
기독교 소 회	서울성동구성내동 160	홍 은 표
맹인 자활원	서울도봉구창동 189	김 석 인
성 광 원	강원도원주시인동 18	이 상 만
충북광화원	충북청주시탑동 185	우 경 천
인천광명원	경기인천북구십정동 185	송 보 애
부산박이로하우스	부산시서구안남동 180	이 건 호
천 광 원	대전시용운동 505	
전북맹아원	전북이리시마동 105-10	권 영 조
광주영광원	전남광주시학 3 동 901	이 순 덕
대한안마사협회 전국902 시내414	서울성동상왕십 741삼일아파트18동210	최 영 철
대한역리학회 전국550 시내252	서울종로구봉익동 9	신 창 균
맹인학사회	서울도봉구쌍문동 478-45	양 정 신

자료 : 한국시각장애자 복지회 제공

俄山社会福祉事業財団이 発行한 韓國의 社会福祉에 發表된 身体
 障碍施設의 現況을 보면 總 57個 福祉施設中 서울特別市 管內에
 11個 施設로 가장 많고 釜山市가 10個, 全南이 9個 施
 設, 慶北이 7個 施設의 順位로 所在하고 있으며 지체障碍者施設
 이 19個로 33.3%를 점하여 가장 많고 視覺障碍施設이 15個
 로 26.4%를 차지하며 농아시설이 13個, 混合施設이 10個 이
 었다.

施設이 收容対象은 成人施設이 9個로 15.8%를 차지하며 兒
 童施設이 44個로 77.2%를 차지하여 大部分을 점하고 있으며
 成人과 兒童을 混合收容하고 있는 施設은 4個로 7%를 나타내

[表 - 14] 施設種類別 收容対象別 身体障碍者福祉施設

단위 : 개소

種 類 对 象	청각言語 障碍施設	視 覺 障碍施設	지체장애 施 設	混 合 施 設	計	%
성 인	1	2	3	3	9	15.8
아 동	12	13	14	5	44	77.2
성인과아동	-	-	2	2	2	7.0
계	13	15	19	10	10	100.0

資料 : 韓國의 社会福祉, 아산사회福祉財団

고 있다. 法人登録形態는 社会福祉法人이 31 個 施設로 54.4 %를 나타내어 가장 많고 学校로 認可되어 있는 施設이 20 個로 35.1 %를 차지하였으며 財団法人으로 聴覚 및 視覚障碍施設中 各 1 個씩 이었고, 未認可施設이 4 個이었다. 한편, 設立時期는 設立年度別로 보면 1951 年부터 1960 年 사이가 가장 많아 32 個 施設로서 51.1 %를 나타내고 있으며 1961 年부터 1970 年 사이가 12 個 施設로 21.2 %를 나타내고 있으며, 1971 年 以後가 11 個 施設로 19.3 %를 나타내고 있고, 1946 年부터 1950 년까지가 1 個 施設, 1945 年 이전의 1 個 施設로 되어 있다. 施設の 認可

[表 - 15] 障碍者施設種類別 認可時期

단위 : 개소

인카시기 種 類	1945 ~1950	1951 ~1960	1961 ~1970	1971 년 이후	비인가	계
청각언어장애시설	-	2	7	4		13
시각장애시설	-	4	8	2	1	15
지체장애시설	1	6	7	3	2	19
혼 합 시 설	-	3	5	1	1	10
계	1	15	27	10	4	57
%	1.7	26.4	74.4	17.5	7.0	100.0

時期는 1961년부터 1970年 사이가 27個 施設로 47.4%를
점하여 가장 많고 1951년부터 1960年 사이가 15個 施設로
26.4%를 나타내고 있고, 1971年 이후가 10個 施設로 17.5%
를 나타내고 있으며, 1946년부터 1950年 사이가 1個 施設로
있고 未認可施設이 4個로서 視覚障礙施設 1個, 지체장애시설 2
個, 混合施設 1個였다.

混合施設에 특이한 것은 1950年代보다 1960年代 設立한
施設과 인가받은 시설이 각각 6個와 5個施設로 늘고 있으며
10個 施設中 아직도 1個 施設이認可받지 못한채 운영되어
오고 있다.

지체障礙者收容施設의 設立形態는 社会福祉法人이 14個, 学校인
가 3個,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2個 있다. 그 設立時
期는 1945~1950年 사이에 1個, 1950~1960年 사이에
68.4%인 13個가 設立되었으며 1961~1970年 사이에 2個,
1971年 이후에도 3個가 設立되었다. 이들 施設의認可 時期
는 1946~1950年 사이에 1個, 1951~1960年에 6個, 1961
~1970年 사이에 7個, 1971年 이후에 3個가認可되었다. 미
인가施設이 2個所가 있다.

視覚障礙 機關은 15個 機關中 社会福祉法人이 46.8%인 7個
이며, 学校認可가 그중 6個, 財団法人이 1個, 未認可施設도 1
個 있다. 法人認可 時期는 設立時期에 비해 비교적 늦어졌는데
해방이전에 設立되었으나 인가는 1951年 이후 1960年 사이에

에 4個가 認可를 얻었고 1961年에서 1970年 사이에 8個, 1971年 이후에 2個를 얻었으나 아직도 미인가 채로 있는 시설도 1個가 있다. 특히 1951年 이후 1960年 사이에 10個가 設立되어 66.8%를 차지하며 1961年 以後 1970年 사이에 1個, 1971年 이후에 3個가 設立되었다. 聴覚・言語障礙施設의 登録形態는 總 13個 施設中 學校認可를 받은 施設이 7個, 社会福祉法人施設이 5個, 財団法人・施設이 1個이었고, 1950年度에 6個施設, 1960年代 3個施設, 1970年代 4個 施設이 設立되었다. 身体障礙者施設 代表者の 性別 年令別 分布를 보면 男子가 39名으로 73.6%를 나타내고 있고 女子가 14名으로 26.4%를 나타내고 있으며 年令은 51歲에서 60歲 사이가 가장 많아 19名으로 35.8%를 나타내고 있으며 41歲에서 50歲사이가 12名으로 22.6%를 나타내고 60歲 이상이 11名으로 20.8%를 나타내고 있으며 31歲에서 40歲 사이가 10名, 30歲 이하가 1名이었다.

障礙者施設代表者の 學歷은 大卒이 27名으로 50.9%를 나타내어 가장 많고 高卒이 12名으로 22.6%를 나타내었으며, 中卒 및 專門大卒이 각각 5名으로 나타 났으며 国卒이 2名, 無學이 1名, 大学院이 1名으로 되어 있다. 代表者가 된 經歷은 5年 以下가 15名으로 28.3%를 나타내어 가장 많고 6年 以上 10年 이하가 13名으로 24.5%를 나타내고 있으며, 11年이상 15年 이하가 8名, 16年이상 20年 以下가 8名, 21年 이상 25年 이하

〔表-16〕 離母者施設代表者 性別・年齢別分布

단위 : 동

年令 性別	21 ~ 30 세	31 ~ 40 세	41 ~ 50 세	51 ~ 60 세	60 歲 이 상	計	%
남	1	7	8	16	7	39	73.6
여		3	4	3	4	14	26.4
계	1	10	12	19	11	53	100.0
%	1.9	18.9	22.6	35.8	20.8	100	

資料：아산사회복지재단간, 한국의 사회복지

〔表-17〕 身体障碍者 施設代表者 学力別分布

단위 : 명

學歷 性別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專門 大卒	大卒	大學 院卒	計
남	1	1	5	7	5	19	1	39
여		1		5	-	8	-	14
계	1	2	5	12	5	27	1	53
%	1.9	3.9	9.4	22.6	9.4	50.9	1.9	100.0

資料 ; 아산사회복지재단간 한국의 사회복지

가 1名, 26年以上 30年 以下가 6名, 32年 이상이 1名이
있으며 26年 以上の 長期 勤続者는 全部 男子였다 施設代表
者の 他職業 従事者는 9名으로서 17%를 나타내고 있으며 学校
長을 兼職하는 경우가 2명이고 社会事業 施設長이 3名, 医師職
이 2名, 神父가 1名, 商業이 1名이었다

各施設에 종사하고 있는 職員의 총수는 1,153名이었으며 그중
각 専門職의 有資格者數는 498名으로 43.2%를 차지하였다 施
設従事者の 學歷은 高卒이 425名으로 36.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大卒로 354名으로 30.7%를 나타내었고, 国卒이
191名으로 16.6%를 차지하여 3位로 많았다

전체 직종중 특수교사 및 職業訓練原因矯導職이 369名으로 32
%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노무직이 246名으로 21.3%를 차지하
여 다음으로 많았으며 영양사 보모등 양호직이 234名으로 20.3
%를 차지하여 3位로 많았으며 관리직이 160名으로 13.9%를
차지했고 의사, 간호원, 물리치료의사등 의료직은 144名으로 12.5
%를 차지하여 최하위였다 교도직이 많은 결과는 각시설의 附屬
学校 従事者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로 再活에 重要な 役
割을 담당하는 医療専門職이 最下位の 位值를 차지 함은 問題点
이라 하겠다

混合障礙施設에 종사하는 職員의 總數는 254名이었으며 그중 노
무직이 106名으로서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교도직이 78
名으로서 30.7%로 다음으로 많고 관리직이 36名으로서 11%,

양호직이 19名으로서 5.8%, 医療職이 15名으로 4.6%의 分布를 보이며 사무직과 勞務職을 除外한 社会事業家, 医療職, 養護職, 敎導職 従事者는 125名으로서 그중 有資格者가 73名으로서 58.4%를 차지하였다

지체 障礙施設의 代表者 現況을 보면, 19個 機關中 施設代表가 男子인 곳이 14個로 73.7%이고, 여자가 5名이며, 年令別로는 31 ~ 40歲가 男子 2名 女子 3名, 41 ~ 50歲는 남자가 3名, 51 ~ 60歲는 남자가 6명, 여자가 2명, 61歲 이상은 남자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最終學歷은 무학이 남자 1명, 國卒이 여자 1名, 中学出身의 男子 4名, 高等学校 卒業者가 男子 1名, 여자가 2명, 大學卒業者가 남자 8명, 여자가 2명이었으며 현시설장이 된 經歷은 5年 이하가 男女 각 3名, 6 ~ 10年이 남자 3명, 여자 1명, 11 ~ 15年이 男子 2名, 여자 1名, 21 ~ 25年이 男子 1名 26 ~ 30年이 男子 4名, 31年 이상이 남자 1名이었다 한편, 施設代表者중 兼業者로서 다른 職業에 종사하는 職種은 의사와 사회사업 시설장으로 각 1명씩 활동하고 있다

지체 障礙者施設従事者の 業務를 관리직, 의료직, 교도직, 양호직, 노무직으로 크게 区分하고 管理職에는 事務職과 社会事業家들, 의료직에는 醫師, 간호원,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들, 교도직에는 特殊敎師, 職業訓練員을 양호직에는 양양사 보모들 노무직에는 食母, 침모 및 雜役으로 分類하여 이에 속한 종사자들의

[表 - 18] 지체장애施設代表者の 性別・年齢別分布

단위 : 명

年齢 性別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 이상	계	%
남	-	2	3	6	3	14	73.7
여	-	3	-	2	-	5	26.3
계	-	5	3	8	3	19	100
%	-	26.3	15.8	42.1	15.8	1000	

資料출소 ; 한국의 사회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數와 學歷 및 從事者로서의 자격 유무를 살펴 보면 事務職은 資格證이 따로 必要치 않고 그 수는 총 48名이며, 高等学校卒業者가 21名으로 가장 많고, 大學卒業者가 19名, 中學卒業者가 6名, 國民學校 卒業者와 大學院 出身이 각각 1名씩이며 社會事業家는 총 23명중 有資格者가 22名이며, 의료직중 의사가 23名, 간호원이 31名, 物理治療士가 21명중 14명이 유자격자이며, 작업치료사가 9명중 6명이 유자격자이며, 언어치료사가 2名 모두 자격소지자이다 교도직에는 特殊敎師가 56명중 51명이 자격증을 가졌으며, 職業訓練員이 총 8명 중 4명이 자격을 가졌다 양호직의 영양사가 6명중 4명이 유자격자이며, 보모가 130명중

19名이만이 유자격자이며, 노무직의 침모, 식모가 30명 雜役이 43名인데 이들도 자격이 必要치 않다. 전체적으로 學歷을 보면 무학이 3명, 国民学校 出身이 78名, 中学校卒業者가 78名, 高等学校 出身이 135名, 大学卒業者가 138名, 大学院 출신이 3名인데 의료직 교도직의 學歷은 거의가 高等学校出身 以上이며 大部分이 大学出身이며, 양호직이나 노무직의 學歷이 高等学校 卒業이하가 많았다. 그 외에는 의료기사가 3명 모두 有資格者이며, 보조기 제작 기사가 7名, 의지제작기사가 4名, 의지훈련사가 1명, 기타가 13명이어서 총 30명중 유자격자가 3명이므로 전체적으로 465명중 39.6%인 184명만이 유격자이므로 자격이 必要치 않은 사무직과 雜役 121명을 제하면 163명이 무자격자이다.

視覚障碍施設大表者들을 性別로 区分해 보면 男子가 9명, 女子가 5명이며, 年齡別로 나누어 보면 20~30세에 남자 1명, 30~40세에 남자 2명, 40~50세에 남자 1명, 여자 2명, 50~60세에 남자 3명, 60세 이상의 남자 2명, 여자 3명이다. 그 勞力은 高等学校 卒業者가 男子 3名, 女子 3名, 大学卒業者가 남자 5명, 여자 2명, 大学院 卒業者가 男子 1名이며 시설장이 된 經歷은 5年 이하가 男子 2名 여자 1명, 제 3명이며, 6年 이상 10年 이하가 남자 4명, 여자 2명, 제 6명이며, 11年 이상 15年 이하가 남자 1명, 16年 이상 20年 이하가 남녀 각 1명씩 2명이고, 21년 이상 25년 이하가 여자 1명이며 26年 이상 3年 이하가 남자 1명이다. 이들 大部分

이 다른 職業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나 그중 4명은 商業, 神父, 學校長, 社會事業施設長에 각 1명씩 종사하고 있다. 視覺障礙施設 從事者를 보면, 관리직에는 事務職과 社會事業家가 包含되는데 사무직은 中卒 2名, 高卒이 9명, 大卒이 6명으로 총 17명이며, 社會事業家は 高卒이 4명인데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였고, 大卒이 3名, 大学院修了者가 1名 총 8명인데,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医療職에는 醫師가 1명, 간호원이 5명인데 高卒이 3명, 大卒이 2명으로 모두 有資格者이며, 물리치료사 2명은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 1명씩으로 資格証을 소지하고 있다. 교도직에는 特殊教師와 職業訓練員이 있는데 特殊教師는 總 123명 중 유자격자가 98명으로 70.5%인데 学力은 國卒이 1명 자격증을 가진 中卒이 1명, 高等學校 卒業者가 53명 중 有資格者가 42명이며, 大學卒業者가 66명이며 그중 52명이 資格証所持者이고 大学院 出身 2명은 모두 有資格者이다. 職業訓練員 2명은 자기 高卒者와 大卒者이며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養護職에는 營養士와 보모가 있는데 15개 기관중 단 한곳에도 영양사가 없다 거의가 기숙생활을 하는 시설로서 시급히 시정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보모는 총 60명중 23명만이 유자격자인데 國民學校 卒業者가 20명중 5명이 資格証 所持者이며 中卒者 7명중 4명이, 高卒者 35명중 12명이 각각 有資格者들이다, 다음 자격증이 必要치 않은 노무직에는 식모, 침모, 雜役이 包含되는데 식모와 침모가 19명, 雜役이 23명이다. 이렇게 볼 때 총인원은 257명이며 유자격자는

13 명 이 때.

聴覚・言語障碍施設 - 代表者の 学力은 大卒이 제일 많은 50 %, 専門学校卒業과 高等学校卒業이 각각 같은 20 %, 国卒이 10 이었다. 福祉施設の 시설대표자가 된 経歴이 5年 以下가 가장 많은 40 %이었고, 다음으로는 16~20年이 30 %를 차지하였고, 세번째로는 11~15年이 20 %로 많았으며 끝으로 6~10年 사이가 10 %이었다.

聴覚言語障碍者は 施設従事者は 総 13 個 施設에 従事하는 종사자는 總 177 명이었고 그중 敎導職이 가장 많은 102 名으로 57.6 %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勞務職이 28 名으로서, 15.8 %, 3 위로는 13.1 %인 管理職 23 名, 4 위는 養護職으로서 19 名에 10.7 %, 끝으로 医療職의 勤務者로서 5 名인 2.8 %이었다. 또한 177 名중 의료 직, 교도직, 양호직 그리고 사회사업가등의 専門職에 종사하는 人員은 133 명이었고, 그중 유자격자는 102 명으로 76.7 %이었다.

다음으로 障碍者 施設の 財政 및 後援機關부문중 施設の 運営財源을 보면, 国庫補助를 91 %이상 받고 있는 施設이 10 個 施設이었고 51~60 %이상이 22.8 %에 해당하는 이 13 개이었고 61~70 % 받는 시설이 7 개시설이었다. 또한 전혀 政府補助를 받고 있지 않은 施設이 6 個施設로 10.5 %나 되었다.

国民団体補助로 91 % 以上을 運営 財源으로 하고 있는 施設이 1 個이고, 41 % 에서 50 %사이가 2 개, 31~40 % 사이가 5 개, 21~30 %가 4 개, 11~20 %가 7 개, 1~10 %가 12 개 시설

[表 - 19] 身体障碍者施設에 对한 政府補助現況

단위 : 개소

百 分 率 施設種類	없 음	1 ~ 10 %	11 ~ 20 %	21 ~ 30 %	31 ~ 40 %	41 ~ 50 %	51 ~ 60 %	61 ~ 70 %	71 ~ 80 %	81 ~ 90 %	90 ~ 이상 %
청각언어장애	-	-	-	1	-	-	4	2	2	1	3
시각장애	1	1	1	-	-	1	4	2	1	-	4
지체장애	2	1	-	-	1	3	5	2	2	2	1
혼합시설	3	-	1	1	1	-	-	1	1	1	2
計 (%)	6 (10.5)	2 (3.5)	2 (3.5)	2 (3.5)	2 (3.5)	4 (7.1)	13 (22.8)	7 (12.3)	6 (10.8)	3 (5.3)	10 (17.4)

[表 - 20] 身体障碍施設の 自体財源

단위 : 개소

比 率 施設種類	없음	1 ~ 10 %	11 ~ 20 %	21 ~ 30 %	31 ~ 40 %	41 ~ 50 %	51 ~ 60 %	61 ~ 70 %	71 ~ 80 %	81 ~ 90 %	91% 이상	계
청각장애	2	2	5	3	1	-	-	-	-	-	-	13
시각장애	4	5	1	5	-	-	-	-	-	-	-	15
지체장애	3	4	7	1	2	1	-	-	-	-	1	19
혼합施設	3	2	1	1	1	2	-	-	-	-	-	10
計 (%)	12 (21.1)	13 (22.8)	14 (24.6)	10 (17.5)	4 (7.1)	3 (5.4)	-	-	-	-	1 (1.8)	57 (100.0)

이며 전혀 없는 施設이 27개로 45.6%이었다. 총 57개 施設 중 外援機關補助를 받고 있는 시설이 22개소(38.6%) 施設이었으며, 그중 11~20%의 보조를 받고 있는 施設이 9개소(15.8%)로 가장 많고, 1~10%가 6개소(10.5%)로 다음으로 많았고 41~50%가 2개 施設이었다. 自体財源負擔率は 11~20%가 가장 많아 14개(24.6%) 施設이고, 다음이 1~10%가 13개 施設(22.8%)이고, 21~30%가 10개 施設(17.5%)로 다음으로 많고 41~50%를 중당하는 시설은 3개시설로 나타났으며 自体財源이 전혀 없는 시설이 12개 施設이었다. 기부, 증여 등 其他 財源에 多少 依存하는 施設은 33개 施設이었다.

基本資産의 경우, 밭을 4,000坪이상 所有하고 있는 시설이 4개이고, 3,001~3,500坪이 1個施設, 2501~3,000坪이 3개시설, 1,501坪~2,000坪이 1개, 1,001~1,500坪이 2個, 501~1,000坪이 2개, 101~500坪이 5개施設이었다. 논(畓)을 所有하고 있는 施設은 4,000坪이상이 2개시설, 501~3,500坪이 6개시설이었다. 果樹園을 所有하고 있는 施設은 4個 施設로 4,000坪이상이 1個, 3001~3,500坪이 2개, 1,501~2,000坪이 1개 시설이었다. 農場을 所有하고 있는 施設은 7개로서 4,000坪이이상이 2개 3,01~4,000坪이 2개, 2,501~3,000坪이 1개, 1,001~1,500坪이 1개, 501~1,000坪이 1個 施設이었다. 垡地畵 4,000坪 이상, 소유자가 4개 시설이고 101~1,000坪이 가장 많아 16個(28.1)% 施設이고 다음이 101~500坪으로 9個 施設이며 2,001~

2,500坪이 7개 시설이었으며 垜地가 없는 施設도 5개이었다.
施設의 建物은 철근콘크리트조가 151~150坪이 9개 시설이
고, 101~150坪이 8개 시설, 251~300坪이 4개시설, 301
~350坪이 3개시설, 501~1,000坪이 3개시설, 201~250坪이
2個施設, 51~100坪이 11個 施設이고, 50坪 以上 351~400
坪, 401~450坪, 1,001坪以上이 각각 1개 施設이고 無応答
이 13個 施設이었다. 연와조는 501~1,000坪이 2個施設이고,
50坪 以下가 10개 施設이고, 51~100坪이 6個施設, 151~
200坪이 6個施設, 101~105坪, 201~250坪이 각각 3個施
設이고 251~300坪이 1個 施設이었다. 木造는 50坪 以下가
9個施設로 가장 많고 51坪에서 150坪이 6個 施設이었고 151
坪에서 300坪사이가 3個 施設이었고, 無応답이 39個 施設이었다.
其他建物은 50坪이상 250坪까지가 28個 施設이고 1,000坪이
상이 1個 施設이며 無応답이 28個 施設이었다.

施設의 附設學校 및 後援機關을 보면 附屬學校가 있는 境遇가
91個 施設로서 28.6%이고, 後援機關이 있는 경우가 23個 施
設로서 40.4%를 나타내고 있다. 후원기관이 외원기관이 8개
韓國社会福祉 団体が 7개, 宗教团体 3개, 정부기관 및 企業체가
각각 2個씩 이었다. 후원기관 총 23個중 16個가 서울市内
管内에 所在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2개, 부산
시, 강원도, 경북, 전남, 및 미국에 각 1個씩 所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身体障碍施設들이 하고 있는 事業을 보면 주로 再活事業을 実施하고 있다. 즉, 医療再活을 위시하여 教育事業 및 職企再活事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再活医療事業에 의하여 惠沢을 받은 延人員數는 1976년에 158,952名, 1977년에는 189,783명으로 年間 19.4%의 増加를 보이고 있다. 그중 自体施設에 依한 延人員數는 1977년의 경우 183,510명으로 96.7%를 나타내고 있고, 他施設에 依한 數는 6,273명으로 3.3%이다. 1977년의 경우 手術인원은 381명으로 延인원의 0.2%, 診療人員은 77,830명으로 41%에 불과하고 物理治療, 作業治療, 言語治療 補裝具装着 人員은 111,572명으로 58.8%를 나타내었다.

教育事業에 있어서는 幼兒教育에서 高等学校까지 自体施設에서 行한 것이 1976년에 39,425명이고, 1977년은 44,219명이었으며 委託教育에 依한 것이 1976년에 4,793명이었고 1977년에 4,973명으로 委託教育이 減少되었다.

職業訓練은 1976년에 5,538名에서 1977년에 6,214명으로 增加되었고, 派遣訓練은 1976년에 1,852名에서 1977년에 1,144名으로 減少되었으며, 1976년의 就業人員은 1,228名이고 1977년의 그것은 877名으로 尙當수가 減少되었다. 現在 實施하고 있는 職業訓練의 種類는 16個 職種이다.

[表 - 21] 身体障碍施設収容者 職業訓練

내 용	연 도 성 별	1976			1977		
		남	여	계	남	여	계
원 내 훈 련		2,977	2,561	5,538	3,480	2,734	6,214
파 견 훈 련		749	1,103	1,852	401	743	1,144
취 업 훈 련		1,194	34	1,228	100	777	877
계		4,920	3,698	8,618	3,981	4,254	8,235

자료출소 : 한국의 사회복지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表 - 22] 身体障碍者 職業訓練現況

종 별		시 설 수	종 별		시 설 수
목	공	33	수	예	3
양	재	7	양	복	1
원	에	4	라 디 오 T-V 수 리		8
印	刷	1	타	자	2
畜	産	4	안	마	4
철	공	2	침	술	1
양	화	4	보 조 기 제 작		1
편	물	11	기	악	1

資料 : 韓國의 社会福祉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편 身体障碍者 施設의 收容者現況을 보면, 現在 收容能力이 51명 以上 100명인 施設이 19개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50명 이하로 10개 시설이며, 101명에서 150명이 8개 施設로 3위로 많았고, 300 이상의 收容能力을 가진 施設은 3개였다. 그리고 現在 收容되어 있는 수는 男子의 경우 21~30명이 11개 시설로 19.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의 51~60 많으며 30~40명을 收容하고 있는 시설이 6개로 10.5%를 차지하여 3위로 많았다. 그리고 251~300명의 많은 收容者를 가진 施設은 1개뿐이며 10명 이하의 收容者를 가진 시설이 4개였다. 57개 施設의 總 收容者數는 5,870명이며 그중 남자가 3,552명, 여자가 2,318명이었다. 障碍別로 보면 지체障碍가 2,298명으로 39.1%를 나타내어 가장 많고, 混合이 1,468명, 視覺障碍가 1,080명 聽覺 言語障碍가 1,026명으로 分布되어 있으며 年齡別로 보면 7에서 13세 사이가 2,234명으로 38.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14에서 17세 사이가 1,66명으로 23.3%를 차지하여 다음으로 많고, 18세에서 29세 사이가 1,169명으로 19.6%를 차지하여 3위로 많았으며 6세 이하가 388명, 70세 이상은 45명이었다.

兒童施設에 年長者가 있는 施設은 25개 施設로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總 年長者의 數는 574명으로 그중 남자가 357명으로 62.2%를 차지하며 女子가 217명으로 37.8%를 차지하고

있다 成人施設の 収容者の 學歷은 國卒 以下가 948 명으로 72.5 %를 나타내어 가장 많으며, 中卒이 218 명으로 16.7 %를 나타내어 다음으로 많고 高卒이 122 명, 大卒이 19 명, 特殊職業教育이 1 명으로 되어 있다

収容者の 入退院 現況을 보면 一般收容施設の 경우에 있어서는 1976 年에 總 入院者가 872 명, 1977 年이 966 명이었으며, 退院者數는 1976 年이 696 명이고 1977 年이 842 명이였다 退院한 사유는 親權者 인제가 361 명으로 43.8 %를 차지하였고, 転院이 212 명으로 25.7 %를 차지하였다

[表 - 23] 身体障礙者 收容人員別 施設數

단위 : 개소

收容能力 施設種類	50 명 이하	51 ~ 100 명	101- 150 명	151- 200 명	201- 250 명	251- 300 명	300 명	無 応答	計
청각언어 장애 시설	3	2	3	2	-	1	1	1	13
시각장애 시설	3	7	2	-	-	1	1	1	15
지체장애 시설	4	5	2	2	2	2	1	1	16
混合시설	-	5	1	1	2	1	-	-	10
계 (%)	10 17.5	19 33.3	8 14.0	5 8.8	4 7.0	5 8.8	3 5.3	3 5.3	57 100.0

자료출처 : 韓國의 사회복지, 하신 사회복지사업재단

就業은 141명으로 17.2%에 지나지 않았으며 치유로 退院한 數는 39명으로 4.7%였다 特殊學校에 있어서는 총 入校生이 1976년에 594명이었고, 1977년이 662명이었으며 退校生은 1976년에 345명이었고 1977年은 383명이었다

主要施設現況을 보면, 事業에 必要한 院內施設은 再活医療施設로서 病院, 医務室, 物理治療室, 作業治療室, 言語治療室등 그 規模에 있어서 501坪 이상이 2개이고 大部分이 11~100坪 사이였으며 無応答이 많았다

【表 - 24】 成人障碍者施設收容者の 學歷現況

단위 : 명

性別 \ 學歷	国卒 以下	中卒	高卒	大卒 以上	特殊職業 教 育	計
남	551	155	76	14	1	797
여	397	63	46	5	-	511
계	948	218	122	19	1	1,308
%	72.5	16.7	9.2	1.5	0.1	100.0

자료출소 : 한국의사회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教育施設에 있어서는 教室, 點子圖書室, 聽力檢査室, 其他 施設의 規模는 351~400坪이 2個 施設이고 대부분이 11~50坪사이 있으며 無回答이 많았다.

職業訓練施設은 職業訓練院 또는 作業場의 크기가 201~250坪이 2개 施設이고, 11~50坪사이가 23個 施設로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으며 오락시설도 301~350坪이 規模가 1個 施設뿐이며 大部分이 201~250坪이 크기였다.

精 神 障 碍

韓國社會福祉施設中 精神障碍者를 수용하고 있는 45개 施設중에서 그 9個施設을 대상으로 調査한 結果가 俄山社會福祉事業財團에 의하여 發行되었다. 調査에 應한 施設中 精薄兒 特殊學校가 12個 精薄兒 收容施設이 10個, 精神疾患者收容施設이 7개이다. 地域別로 보면 서울 및 釜山等 大都市에 集結되어 있고 영남지역에도 26.6%가 있다.

施設의 形態에 따라 비교해 보면 精薄兒特殊學校는 경기도와 서울 등에 많고 精薄兒收容施設은 서울 및 부산등 대도시에 많다. 반면 精神疾患收容施設은 釜山 및 慶北등 영남지역에 많다. 즉 精神障碍者收容施設은 주로 대도시에 集結되어 있지만 精薄兒 特殊學校는 기서지역에 精薄兒 수용시설은 대도시에 그리고 精神疾患收容施設은 영남지역에 많다. 收容対象者는 68.9%가 아동이고

20.7 %가 成人이며 10.3 %는 成人과 兒童 混合收容이고, 特히 施設의 形態에 따라 비교해 볼 때 精神兒特殊學校는 모두 아동 대상이고 精薄兒收容施設은 80 %가 아동대상이며 반면에 精神疾患 收容施設은 85.7 %가 성인대상으로 分布되어 있다. 法人登錄形態를 보면 社會福祉法人이 55.2 %로 가장 많고, 公立特殊學校 6.9 %, 精薄兒收容所 3.4 %, 大韓聖公會維持財團 3.4 % 教育財團 3.4 %의 순서이고 無回答이 24.1 %이다. 設立期間을 보면 9年 이내가 41.3 %로 대부분이고 10~19年이 20.6 %, 20年 以上 34.4 %이며 平均 設立期間은 14 이다.

특히 施設의 形態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精薄兒特殊學校는 83.3 %가 9年 이내에 設立되었다. 精薄兒 收容施設은 반수가 10~19年 사이에, 그리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71.5 %가 20年 이상이었다. 認可期間을 보면 9年 이내가 37.9 %, 10~19年 34.4 %, 20年 以上 24.1 %로 平均認可期間이 12.6年이다. 그중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16.4年으로 精薄兒收容所의 15.2年이나 精神兒特殊學校의 7.9年보다 認可期間이 길다. 인가 當時의 事業目的은 精薄兒收容施設이 37.9 %로 가장 많고, 育兒 및 海外入養이 20.7 %, 精薄兒特殊教育 17.2 %, 生活保護 및 求護 10.3 %, 지체부자유아동 教育이 6.9 %이며 현재사업목적 역시 정박아 보호수용이 41.4 %로 가장 많고 정박아 特殊教育 37.9 % 지체부자유아동 教育 6.9 %, 生活保護 및 구호 6.9 %, 정신질환자 보호수용 6.9 %의 순이다.

따라서 인가 당시에 비해 現在 變化 추이를 보여주는 目的은 育兒 및 海外入養 目的으로서 6個 施設 모두가 정신질환자의 수용소로 變更된 것이 特徵이다. 事業目的을 變更한 경우는 34.5%이며, 특히 정박아 수용시설에서 6개기관이나 事業目的을 變更하였으며, 그 이유를 보면 정박아 教育의 必要性 2기관, 고아의 감소로 인한 운영난 2기관, 精神疾患 收容의 必要性 2기관 등이다. 즉 40%는 他意에 의해, 60.0%는 자의에 의해 事業目的을 變更하였다.

이들 施設의 代表者를 보면 75.9%가 남성이고, 24.1%는 여성이다. 年齡分布를 보면 30대가 10.4%, 40대가 37.8%, 50대가 37.9%, 60대가 13.8%로서 75.7%가 40대와 50대이고 平均年齡은 49.9세이다. 学力을 보면 大学院 27.6%, 大學校 51.8%로 상류가 79.4%이고, 高等學校 13.8%, 中學校 3.4%로 중류가 17.2%이며, 하류가 3.4%이다.

施設從事者の 特性을 보면 1개 시설당 平均 18.7명이 종사하고 그중 우자격자는 平均 8.4명이다. 施設의 種類에 따라 平均 從事者數를 비교해 보면, 정박아 특수학교가 21.5명으로 가장 많고, 정박아 수용시설 21.4명, 精神疾患 收容施設 10.1명의 순서이다. 따라서 精神疾患收容施設은 시설종사자도 적고 유자격자도 적음을 알 수 있다. 시설종사자가 543명의 職種을 分類해 보면, 교도직이 41.6%로 가장 많고, 양호직 23.5%, 노무직 18.1%, 관리직 11.8%, 医療職 4.9%이고, 有資格者를 보면, 교도직 58.1%,

양호직 26.6%, 의료직 7.9%, 관리직 7.4%의 순서이다.

특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7개의 精神疾患者 收容施設에 의사가 3명뿐이고, 10개 精薄兒 收容施設중 3개기관에 5명뿐이라는 사실로서 國民健康增進 및 福祉增進을 爲하여 시설에 醫師를 상주하도록 하는 対策樹立이 必要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大部分의 精神障礙者 收容施設이 精神障礙者의 再活 및 治療를 위해 시급히 醫師나 職業訓練員, 物理治療士, 言語治療工, 職業治療士등을 確保해야 할 必要를 나타낸다.

精神障礙者施設의 運營財源을 보면 政府補助가 52.3%로 가장 많고 外國撥入補助 8.3%, 민간단체 보조 5.9%, 기타보조 8.7%이며, 自體財源은 24.8%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운영비를 外部에 依存하는 景響이 있다. 특히 精神疾患者의 收容施設의 경우에는 自體財源이 8.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정박아 특수학교의 24.0%나, 정박아수용시설의 30.4%보다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설운영비를 보면 1천만원 미만이 17.3%, 1천만원~2천만원이 17.3%, 2천만원~3천만원이 27.6%, 3천만원 미만이 62.2%로 대부분이다. 4천만원~5천만원 6.9%, 5천만원~1억원 6.9%, 1억원 이상 3.4%이다. 시설당 平均運營費는 2千7百萬元 정도이다. 基本資產은 施設種類別로 부동산이 있는 施設은 89.7%이고 그중 특히 垡地가 있는 경우 86.2% 建物을 갖고 있는 경우는 82.8%, 밭이 있는 경우는 34.5, 논 13.8%, 과수원 6.9%, 농장 6.9% 등이다. 특히 정신질환

수용시설에 논발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농산이 있는 시설은 24.1%이고 특히 예금을 갖고 있는 시설은 24.1%이고 주식이나 당권을 갖고 있는 시설은 없으며, 精滯児特殊学校の 경우 다른 기관보다 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施設の 背景을 보면, 收容施設中 55.2%는 오락시설이 있으며 51.7%는 自体教育施設이 있고 51.7%는 자매결연기관이 있으며 48.3%는 再活医療施設이 있고 34.5%는 作業訓練施設이 있으며 34.5%는 附設學校가 있고, 27.6%는 후원시설이 있으며 17.2%는 委託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자매결연기관의 관심도를 보면 40.1%는 관심이 높고, 13.3%는 보통이고 46.7%는 관심이 적다.

한편, 韓國全体の 精神障礙者 施設の 實態를 보면 全体 45個 施設에 8,045명상이 있어 한시설당 평균 병상수는 179명상이며 현재 6,627명이 수용되어 있어 시설당 147명이 되며 병상가동율은 82.4%이다. 그중 남성이 60.5%이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는 남성이 특히 많다.

특히 정박아 수용시설의 수용능태를 보면, 전국에 18개 시설이 있고, 收容能力은 2,670명으로 한시설당 약 150명 수용가하며, 현재 2,235명이 수용되어 있어 시설당 124.2명이 수용되어 있다. 精滯児 收容所の 地域分布를 보면, 서울 및 부산등 대도시에 시설의 61.1%가 집결되어 있고 收容能力의 59.9%, 그리고 현원의 58.3%가 대도시에 집결되었다.

[표 - 25] 한국정신장애자 收容施設実績

시 설 수	收容能力	現 在 收容者數	施設当 平 均	병 당 가 牀 數
정 박아학교 15	2,645	1,979	132	74.8
정 박아수용시설 18	2,235	2,235	124	83.7
정신질환자시설 12	2,270	2,413	201	88.4

자료출처: 한국의 사회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표 - 26] 기관의 지역分佈

서 울 10	충 남 9
부 산 12	경 북 8
경 기 6	경 남 3
충 북 2	전 북 1
계 45	

특히 경북지역은 超過收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충북지역의 경우는 시설당 수용자도 적고 병상가동율도 낮다. 경남, 충북, 전남, 제주, 강원도등지에는 정박시설이 없는 狀態이다.

精神疾患者の 效果的인 保護와 再活教育을 통한 効率的인 社会 復歸를 爲해 精神障礙者를 保護收容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實態를 보면 全國에 모두 12개 시설이 있고, 그 收容能力은 2,730 명으로 시설당 227 명 정도이다.

현재 2,413 명이 수용되어 있고 남 67.1%를 나타내고 있다. 地域分布를 보면 영남지역에 75%가 집중되어 있다. 시설당 수용자 수를 보면 충남이 평균 300 여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은 80 여명으로 가장 적다.

한편, 서울, 경기, 전남, 제주, 강원도에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전혀 없다.

이상에서 본대로 정신장애자 수용시설은 地域分布上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第Ⅴ章 障碍者 福祉法の 制定方向

第 4 章 障礙者 福祉法의 制定方向

UN이 採択한 世界人種宣言 第 25 条는 「自己와 家族의 健康과 福利를 위하여 充分한 生活水準을 享有하며 疾病, 能力喪失등 生活不能의 경우 保護를 받아야 함은 人間으로서의 天賦의 權利」라고 宣言하였고 이는 二次大戰 이후의 現代福祉國家理念을 천명한 것으로서 같은 해 (1948) 公布된 우리 憲法에서도 國民의 基本的 權利로서 規定하고 그후 수차 改正되면서 그 保護規定을 強化함으로서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社會保護의 增進에 努力하여야 할 國家의 義務 生活無能力者의 特別保護權利, 保健에 關하여 保護받는 權利등을 明文化하고 있다.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은 人間으로서 누려야 할 權利이기 때문에 동시에 國家의 義務가 되어 이것은 한낱 政治的 구호에만 그쳐서는 않되고 實際로 成就되어야 할 課題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憲法의 保障的 規定에 입각하여 여러 形態의 社會保障制度의 一環으로 軍事援護對象者保護法, 勞動關係法律등, 公害防止 災害保障, 生活保護, 醫療保險, 社會福祉事業法, 兒童福利法等 一般的인 福祉立法은 相當한 水準에 와있으며, 其他로도 寄生蟲, 結核, 傳染病 倫落行爲等 特別한 對象者의 保護立法도 相當한 水準까지 보장체제를 確保하도록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人口의 4 ~ 5 %까지 推算되는 心身障礙者를 爲해서는 아

직도 基本法조차 制定되지 않고 있어 '韓國의 福祉' 이미지를 損傷할 뿐만아니라 障礙者를 爲한 福祉事業의 增進에 障礙的 要因이 되고 있다. 아마 이것은 心身障礙者에 對한 生存權의 權利意識의 결여, 社會的連帶責任感의 稀薄등으로 종래의 未溫的인 처우관을 扞하지 못하여 國家나 社會가 그들을 權利의 主體로서 認識하지 못하고 그들의 保護를 다만 慈善的, 施惠的, 社會防衛的 境地에서만 보려하는에서 기인되었다고 보여진다. 비록 身體障礙者가 全體國民의 적은 部分이라고 볼지라도 現代福祉國家의 義務와 國民의 權利로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실질적인 機會均等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狀態가 極히 不利한 條件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들의 保護를 法的으로 規定함은 너무나 必要하다 하겠다. 이들의 教育權이나, 勤勞權, 公務參與權등이 法에 依해 保障되어야 하며 기 타의 保護助置가 보장될 心身障礙福祉法이 制定되어야 하 겠다.

한편, 心身障礙者와 그 家族은 勿論 같은 社會構成員으로서 이 들의 再活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福祉를 누려 보겠다는 念頭는 第4次 經濟開發 5個年開發에 그 比重이 상당히 두어지므로서 더욱 提高되고 있다.

均衡된 社會開發의 一環으로서 障礙者의 再活과 福祉對策은 福祉社會具現의 中心的 問題로서 가장 優先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心身の 障礙때문에 正常的인 社會生活을 營爲할 수 없는

社会的 弱者이므로 自立을 위한 綜合的 對策이 누구보다도 必要하기 때문이다.

즉, 障礙者 本人의 福祉와 幸福은 勿論 真正한 社会倫理를 國民의 意識構造 속에 定着하여 참된 國民總和와 國民福祉를 實現시키는 經濟社会發展에의 促進劑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國際身體障礙者再活協會가 70年代를 再活의 10年(The Decade of Rehabilitation)으로 定했고, 1976年 UN總회는 1979年을 世界兒童의 해로 定함과 同時 1981年을 障礙者를 爲한 國際的인 해(International Year for Disabled Persons)로 宣布했으며, 韓國에서는 1979年에 汎太平洋再活會議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와같은 經濟發展 및 社会倫理的인 當위성과 國內外的인 趨勢와 時代的 要請은 障礙福祉基本法の의 制定必要性을 더욱 高調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障礙者 福祉의 性格과 推進方向을 明確히 規定지우는 綜合的인 基本法이야말로 韓國의 社会保障의 內實을 기하는 값진 열쇠가 되리라고 確信한다.

韓國障礙者再活協會가 推進해 온 法案의 概要와 그 制定의 必要性을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주1)}

1. 障礙者의 問題와 障礙者觀

障礙의 發生은 現代社会의 커다란 社会問題로 부각되고 있으

주 1] 再活協會主催 第 2 回再活심포지움資料, 1977 page.1

며 現代生活은 누구나 一生동안에 障礙를 입을 수 있는 危險性이 自身の 問題로 實感되고 있다.

醫學의 發達은 人間의 수명을 延長시키고 있는 반면 해마다 2 ~ 3 %씩의 기형아출산율을 낳고 있는가 하면 各種 現代的 産業災害로 因한 障礙者人口는 날로 增加一路에 있다. 障礙者 出現率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全國規模의 綜合的인 實態調査가 아직 없으나 美國이 10.6 %, 英國이 11.79 ~ 13.13 %等 先進國에 비추어 보아 대체로 10 %線으로 豫則할 수 있으며 障礙發生의 原因은 後天性이 先天性보다 현저히 增加되고 있는 傾向이다. 이러한 障礙者 問題는 家庭問題와 社會問題로 擴大되므로 個人的인 責任보다는 社會的인 責任과 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原則이다. 障礙者觀은 時人에 따라 크게 變遷되어 있는데, A.O.Heck는 主로 지체부자유者에 對한 社會的 態度가

1) 絶滅의 時代

2) 조소의 時代

3) 身體的인 保護의 時代를 거쳐

4) 오늘날의 福祉와 教育의 時代로 옮겨져 왔다고 했다.

이들에 對한 올바른 理解態度는 障礙 그자체에 對한 理解보다는 한 人間으로서의 障礙者에 對한 人間的 理解를 하며, 社會連帶性과 相互扶助의 精神을 바탕으로 障礙者의 再活, 自立, 福祉具現에의 努力을 開發, 伸張, 擁護해야 하는 것이다.

2. 障礙者對策의 問題點

이제까지의 障礙者對策의 根本原理는 保護라는 이름하에 隔離나 差別等 消極的이었으나 오늘날은 融和와 統合이라는 統合的 概念으로 轉換되고 있다. 現代科學과 社會政策이 障礙者의 增加와 急進의 異積現象에 더해 效果의 으로 對處해 나가지 못하므로 深刻한 社會問題와 全人類的인 課題로 道進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障礙者福祉는 家庭保護에서 施設保護로, 施設保護에서 地域的인 保護로 發展되고 있다. 이러한 地域的인 保護는 國家의 機能과 國民의 役割을 밝히기 위하여 障礙者福祉基本法을 徹底히 要求하게 된다.

外國의 障礙者福祉對策의 特徵과 우리나라의 福祉對策의 特徵과 우리나라의 福祉對策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美國의 特徵은 1) Rehabilitation의 對象者를 心身障礙의 觀點에서 보다는 職業障礙의 觀點에서 把握하며, 2) 施設의 增設과 內部施設의 建築學的 改善案에 特色을 두고 있으며, 3) 盲人 就業推進을 爲한 多樣한 對策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 援産場 (Sheltered workshop) 이 補充되고 있는 것 등이다. 英國制度의 特徵은 1) 更生醫療 및 醫療保障制의 補充, 2) 保護雇傭에 대한 英國勞動省의 積極的 支援, 3) 社會問題의 豫防等이고, 우리나라의 問題點으로는 1) 실태 調査의 不足, 2) 障礙者의 福祉, 再活을 爲한 專門家와 이들의 養成機關의 不足, 3) 障礙者에 對한 社會的 認識의 不足등을 들 수 있다.

3. 障礙者福祉基本法の 性格과 内容

障礙者福祉法은 正常人에 비해 낮은 作業能力과 損傷의인面을 補完해서 自動적으로 再活할 수 있도록 援助하는 것을 主로 하면서 必要한 範圍 안에서 適切한 保護를 積極적으로 保障하는 것을 特色으로 한다.

이 基本法の 適用対象은

1) 지체不自由

2) 精神薄弱

3) 視覚障礙

4) 聴覚言語平衡機能障礙

5) 内部障礙이며 障礙의 克服과 再活의 意志와 같은 障礙者 自身の 自助的 努力과 再活의 經濟社会的인 側面을 強調했다. 또한 中央官署와 地方公共團體의 共同責任으로 遂行할 수 있는 行政體系에 留意하면서 職業訓練과 雇傭促進, 発達保障, 育成医療과 再活 医療, 文化的인 生活保護 그리고 特殊教育의 擴大와 發生豫防 및 実態把握에 대한 國家의 責任을 強調했다.

韓國再活協會가 提案한 基本法の 内容은 目的과 基本理念, 障礙者의 定義 國家와 國民 그리고 障礙者의 責任, 財政措置, 雇傭促進, 經濟的, 稅制的 措置, 國民의 啓蒙, 障礙者福祉施策의 審議機構 行政制度等を 包含한 4章 30條 附則으로 되어 있다.

4. 障礙者福祉基法の 實現方法

이 基本法の 實現은 障礙者의 needs와 條件을 考慮한 여러 전문가의 長期的이고 協力的인 Team approach로서 專門的인 統合 活動을 必要로 한다. 한편으로는 障礙者 自身の 自助의 努力과 地域社會의 여러 社會的 資源과 高度한 公的인 責任과 社會構成員의 깊은 이해속에서 障礙者의 眞正한 福祉가 實現될 수 있다.

이 基本法은 當장 先進國과 같은 水準의 財政的인 負擔을 國家나 公共團體에 주기보다는 經濟發展의 階階에 相應한 漸進的인 扩充을 위한 科學的이며 綜合的인 福祉推進의 基本方向과 基本的인 施策을 밝히는 制度化와 行政을 專門化하자는데 根本 趣旨를 두고 있다.

한편, 日本의 障礙者福祉基本法을 分析하면 大略 아래와 같은 점을 찾게 된다.

日本의 心身障害者 対策基本法の 개요

이 法은 心身障害者対策에 관한 基本的 事項을 定하고, 今後의 方向을 밝히며 國家 및 自治團體를 通한 일관성 있는 체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身體障害者対策의 實施方法, 內容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法은

1) 總 則

2) 心身障害者 發生의 豫防에 關한 基本的 施策

3) 心身障礙者の 福祉에 관한 基本的 施策

4) 心身障礙者対策協議會에 관한 規定등 4 장으로 되어 있다.

이 法의 內容을 細分하여 說明하자면,

(1) 基本法은 心身障礙者対策에 관한 國家와 地方公共團體 등의 責務를 밝히며, 心身障礙者の 豫防에 관한 施策과 心身障礙者の 福祉에 關한 施策 또는 心身障礙者福祉에 關한 細部施策의 基本的인 事項을 定하고, 心身障害者対策의 綜合的 推進을 도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第1條)

(2) 心身障害者에 對한 基本的施策으로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의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서 心身障害者の 年令과 心身障害者の 種別 및 程度에 따라 이에 적절한 유기적 또는 綜合的 對策을 定하고 實施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7條)

이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心身障害의 原因에 따른 豫防對策의 强구 및 조사연구, 초기발견, 초기치료의 推進 (第9條)
- ② 機能의 回復, 取得할 必要가 있는 의료의 급부, 障礙로 보상할 必要에 따른 보장구 등의 研究 및 開發, 급부를 해 주는 施設에서의 적절한 保護, 生活指導, 機能回復訓練 援産 등의 實施 (第10條)
- ③ 教育의 內容, 方法의 改善, 充實 (第12條)
- ④ 在宅心身障害者에 對한 訪問指導의 實施 (第13條)
- ⑤ 心身障害者の 能力에 따라 職業에 從事할 수 있도록 하

는 職業指導, 訓練, 職業소개의 실시, 障礙者의 雇傭促進策
의 實施(第 14, 15 条)

⑥ 心身障害者에 관한 判定 相談業務의 綜合的 實施
(第 16 条)

⑦ 必要한 施設의 整備(第 18 条)

⑧ 專門的 技術職員의 養成, 確保(第 19 条)

⑨ 心身障害者의 生活安定에 必要한 年金, 手当等の 改善
(第 20 条)

⑩ 事業의 開始, 就職에 必要한 知識, 技能의 修得等を 援助
하는데 必要한 資金의 貸付, 手当의 支給(第 21 条)

⑪ 心身障害者의 日常生活에 必要한 住宅의 確保와 整備에
따른 公的施設의 構造等 等の 配慮(第 22 条)

⑫ 障礙者를 가진 扶養者의 經濟的 負擔의 輕減을 위한 稅
制上的 措置 国鉄運賃의 割引등(第 23 条)

⑬ 心身障礙者의 再活, 文化, 여가活用に의 參加를 積極的으로
조정해 주는 방안(第 25 条)

(3) 總理府의 부속기관으로서 中央心身障害者 對策協議會 設置
(第 27 条)

(4) 都道府県이 指定하는 都市에 地方心身障害者對策協議會를 設
置하는 방안(30 第)

(소화 45 年 法律 第 84 号 公布)

한편 1979년도 초여름에 본인이 출장하여(대전, 수원, 인천) 천
 각 障礙者 收容施設長들을 만나서 與論을 經청하고 '입법조치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설문을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応答이 왔다.

- 1)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법제정을 할 것
- 2) 障礙者의 登錄制를 規定할 것
- 3) 障礙者의 保護 및 保障規定(免稅規定包含)
- 4) 障礙者 雇傭推進
- 5) 成人障礙者와 兒童과의 區別(수용등에서)
- 6) 施設運營에 대한 自體부담사항 없도록
- 7) 障礙者施設에 대한 基準을 緩和할 것
- 8) 盲人을 위한 就業職種을 指定해 줄 것(안마동)
- 9) 침구 免許를 盲人에게 주도록 할 것
- 10) 特殊施設에 대한 運營支援 규정
- 11) 特殊施設에 必要한 건축 조항
- 12) 시각장애자의 보행 및 交通便宜 규정
- 13) 정기적인 실수 把握 규정
- 14) 中高等教育過程을 위한 학비보조 및 면제규정
- 15) 복지시설 生産品에 대한 판매특혜조치
- 16) 복합장애자 시설을 해 줄 것
- 17) 年長兒 對策에 대한 규정을 할 것
- 18) 文教部所管 特殊教育進興法상의 職業指導와 장애인福祉法에서

다루어야 할 職業指導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19) 종사자의 처우개선 (俸給, 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退職金)

20) 종사자의 (원장包含) 資格訓練強化方案

이 조사설문에 応答해 준 대구시 동구 정화원, 천성원, 경기도 인천시 광명원, 경기도 인천시 성동원 (농시설), 부평소재 우리보육원 (정박시설) 등이다.

한편 韓國身體障礙者 再活協會가 마련한 障礙福祉基本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障礙者福祉基本法 制定의 必要性

오늘날에 先進各國에 있어서는 再活醫學의 發達과 福祉社會體制의 確立으로 障礙者의 再活 福祉分野에 큰 發展을 이룩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福祉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條件의 不備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分野의 落後相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모든 健全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基本的 人權이나 障礙者의 그것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그들도 몇몇한 그 社會의 構成員임에 틀림이 없는 이상 그들의 福祉施策은 당연히 그 國家・社會의 共同責任에 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經濟成長이 이룩되어 豊余한 社會가 오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社會連帶意識이

稀薄하고 社会의 不均衡이 助長되어 人間의 非人間化가 초래되는 社会는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社会福祉를 外面한 經濟繁榮이 초래할 断絶의 社会 不安定한 社会로의 転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均衡된 社会開發의 一環으로서의 우리나라 障礙者의 再活 福祉施策이 劃期的인 轉換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障礙者 福祉에 関한 基本法이 制定되어 障礙者의 再活을 援助, 促進하고 그 再活에 必要한 各種 保護措置를 施行함으로써 障礙者의 福祉向上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再活'이란 身體上의 各種障礙로 말미암아 正常的인 日常生活 및 社会生活을 營爲하기 困難한 者로 하여금 그 障礙를 克服하고 日常家庭生活은 勿論 社会生活의 營爲가 可能케 되어 社会經濟活動에 參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各種 原因으로 말미암아 障礙者 人口가 날로 增加하고 있는 實情임에 비추어 障礙者가 가지는 權利가 擁護되고 再活事業이 普及되며, 障礙者에 對한 一般社会의 認識과 態度 등에 向上發展을 가져오게 하는 立法措置가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障礙者 福祉對策에 関한 國家와 地方公共團體 等の 責任을 明示하고 障礙者의 發生豫防에 関한 施策 및 医療訓練, 保護, 教育, 雇傭, 年金의 支給等 障礙者의 再活, 福祉에 関한 施策의 基本이 되는 事項을 規定하고 障礙者對策의 綜合的 推進을 도모

하기 위하여 障礙者福祉基本法の 制定이 緊要하다고 하는 바이다.

障礙者 福祉基本法 (草案)

第 1 章 總 則

第 1 条 (目的) 이 法은 障礙者의 福祉 對策에 關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를 規定함과 함께 障礙者의 發生 豫防과 医療 保護, 訓練, 教育, 雇用, 年金의 支給等 障礙者福祉 施策의 基本이 되는 事項을 定하며 障礙者 福祉 對策을 綜合的으로 推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条 (定義) 이 法에서 '障礙者'란 視覺障礙, 聽覺障礙, 精神薄弱 및 其他 精神障礙, 지체障礙, 情緒障礙, 言語障礙 등으로 因하여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制限을 받아 社會的 自立에 支障이 있는 者를 말한다.

第 3 条 (基本理念) 모든 障礙者의 人權을 尊重하고 障礙에 따라 바람직한 処遇가 保障됨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 4 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發生을 豫防하며 障礙者의 福祉를 增進하여야 할 責務가 있다.

第 6 条 (自立에의 努力) ① 障礙者는 그가 지닌 個性과 能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스스로 社会經濟活動에 参与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障碍者의 家庭은 障碍者의 自立促進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 7 条 (施策의 綜合) 障碍者의 福祉施策은 障碍의 種別, 程度에 따라 有機的인 關聯을 맺어 綜合的으로 策定되고 實施되어야 한다.

第 8 条 (財政의 措置) 政府는 이 法律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法制上 및 財政上의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第 9 条 (年次報告) ① 政府는 每年 国会에 障碍者의 發生 豫防 및 障碍者의 福祉에 關하여 講究한 施策에 對하여 報告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每年 障碍者 狀況을 考慮하여 講究하여 하고자 하는 施策을 明確히 하여 文書로 作成 이를 国会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 章 障碍者發生豫防의 基本的 施策

第 10 条 国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者의 發生原因과 그 豫防에 對한 研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第 11 条 国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者의 發生 豫防을 爲하여 必要한 知識의 普及, 母子保健對策의 強化, 障碍의 原因이 되는 疾病의 早期発見과 早期治療의 推進 및 其他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 3 章 障礙者福祉의 基本的施策

第 12 条 (医療 및 訓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年令, 障礙의 種別, 障礙의 程度에 따라 生活機能을 回復함에 必要한 醫療, 訓練, 指導 및 補裝具 其他 用具의 支給等을 行함과 함께 適切한 保護 또는 援産을 할 수 있는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前項에 規定한 醫療, 訓練, 指導 및 補裝具 其他 用具의 研究와 開發을 促進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前 2 項의 施策을 實施함에 必要한 施設과 設備을 갖추어야 한다.

第 13 条 (重症 障礙者의 保護)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重症障礙로 말리암아 自立이 아주 困難한 者에 對하여는 平生 必要한 保護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14 条 (居宅障礙者의 指導)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居宅障礙者의 家庭을 訪問 指導하기 위하여 訪問相談員, 訪問敎師, 訪問治療士, 訪問醫師 및 看護員을 두어 醫療, 訓練, 敎育等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 15 条 (敎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年令, 能力, 障礙의 種別 및 程度에 따라 充分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育·內容과 教育方法의 改善 等 必要한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教育에 對한 調査研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前 2項의 施策을 實施함에 必要한 施策과 設備을 갖추어야 한다.

第 16 條 (文化的 諸條件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가 文化的 意欲을 가지고 自主的으로 또한 積極的으로 文化活動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各種 文化的 施設, 設備 其他 諸條件의 整備를 必要한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第 17 條 (職業指導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가 그 能力에 따라 알맞는 職業에 從事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職業指導, 職業訓練, 職業紹介의 實施等 其他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에게 알맞는 職種과 職場에 對한 調査, 研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前 2項의 施策을 갖추어야 한다.

第 18 條 (雇用の 促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雇用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障礙者에게 알맞는 職種과 職場에 對하여 障礙者의 優先採用의 施策을 講究하며, 障礙者가 雇用됨에 따르는 必要한 施設과 設備의 整備等の 助成, 稅制上的 特別措置, 其他 必要한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第 19 條 (自立의 援助)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에 對하여

事業의 開始, 就任等에 必要한 知識, 技能의 習得을 援助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貸付, 手當의 支給, 其他 必要한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第 20 條 (判定 및 相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各種
判定 및 相談業務가 綜合的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制度가
리 利用 되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 21 條 (措置後의 指導, 助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가
그 福祉施策에 따라 各種 措置를 받은 後 日常生活 또는 社會
生活를 正常으로 營爲할 수 있도록 指導 助言함에 必要한 施策
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 22 條 (年金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生活安定을
기하기 위한 年金, 手當等의 制度에 關한 必要한 施策을 講究
하여야 한다.

第 23 條 (住宅의 整備等)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의 生
活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障礙者를 위한 住宅의 確保와 障礙者
에게 住宅의 整備를 促進함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를 위하여 交通機關 其他 公
共施設의 利用에 便宜를 기하기 위한 當該施設의 構造, 設備의
整備等에 대하여 配慮가 되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
다.

第 23 條 (經濟的 措置)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와 그
扶養者의 經濟的 負擔의 輕減을 기하고 障礙者의 自立促進을

기하기 위하여 税制上의 特別措置, 公共施設의 使用料의 減免
其他 必要한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者 福祉增進의 對策으로 障礙者
施設에 거부하는 資産에 對하여 税制上의 特別措置를 講究하여
야 한다

③運輸事業체는 障礙者와 그 扶養者의 經濟的 負擔의 輕減을
期하고 障礙者의 自立 促進을 期하기 위하여 料金等の 減免에
對한 配慮를 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 25 條 (施策에의 配慮) 障礙者福祉 施策의 策定 및 實施에 있
어서는 障礙者의 父母 其他 障礙者의 養育을 맡은 者가 死亡한
後 障礙者의 生活에 對하여 不安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配慮
하여야 한다

第 26 條 (專門要員의 確保) ①第 12 條 3 項, 第 15 條 3 項, 第 17
條 3 項의 施設에는 充分한 數의 專門的 知識 또는 技能이 있
는 職員이 配置되어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前項에 規定한 者, 其他 障礙者 福
祉에 從事하는 者, 第 12 條 1 項에 規定한 用具에 關한 專門的
技術者의 養成 및 訓練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 27 條 (國民의 理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障礙者
에 對하여 바르게 理解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
야 한다

第4章 障礙者 福祉審議會

第28条(中央障礙者 福祉審議會) ①國務總理의 直屬機關으로 中央
障礙者 福祉審議會(以下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中央審議會는 國務總理 및 關係部處長官의 咨文에 應하여 障礙
者 福祉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한다.

③中央審議會는 前項에 規定한 事項에 關하여 國務總理 및 關係
部處長官에게 意見을 進술할 수 있다.

第29条 ①中央審議會는 委員 30名 以內로 組織한다.

②委員은 障礙者의 發生 豫防 및 障礙者의 福祉에 關하여 學識
과 經驗이 있는 者와 關係行政機關員 中에서 國務總理가 任命
한다.

③中央審議會의 事務는 保健社會部 障礙者 福祉局에서 担当한다.

④이 法律이 定하는 것 外에 中央審議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은 따로 定한다.

第30条(地方障礙者 福祉審議會) 地方自治團體는 當該 地方自治

團體에 있어서 障礙者福祉에 關한 重要事項의 調査審議를 위하여
地方障礙者 福祉審議會를 둘 수 있다.

附 則

1. (施行期日) 이 法律의 施行期日은 1981年 4月 20日로 한다.
2. (關係法律의 一部改定) 保健社会部에 障礙者 福祉局을 設置하는 等 關係法律의 一部를 改正한다.

第Ⅳ章 障碍者 福祉體制 研究

2019年12月10日 星期三 12:10:10

第Ⅵ章 障礙者 福祉體制 研究

지금까지 살펴본 障礙者의 狀態에 따른 제반 措置들을 보다 效果的으로 成就하기 위하여 必要的 制度的 장치들 생각할때 이는 障礙者들의 欲求에 따라 必然的으로 設定되어야 하며 大局的인 面에서는 一般 保健医療 서비스와 유사하다 하겠다. 다만 이들의 障礙狀態가 보다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不具이므로 一時的으로 치유되는 一般疾病治療와는 다른 要件들이 많다는 것이 다르다 하겠다. 또한 各種 障礙를 따라 이들에 대한 醫療的, 職業的, 教育的 및 社会的인 対策의 양태도 달라야 하므로 보다 專門的인 知識과 서비스가 要求된다 하겠다. 그러나 本論文에서는 각가지 障礙에 따른 細部的 措置를 위한 施設의 設置나 機關의 運營管理問題에 앞서 보다 大局的인 制度的 장치에 관해 言及하고자 한다.

먼저 心身障礙福祉基本法이 制定되어야 하겠다. 福祉政策을 구체화하고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하려면 立法措置가 되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事業豫算을 企劃担当部處에서 要求하면 먼저 法的根拠를 따지고 있다. 또한 단편적으로 있는 法的根拠는 本格的인 事業의 拡張이나 發展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거의가 保護的 措置에 不過하다. 以上에서 說明된 再活過程 即 障礙者의 早期発見 評價措置 社会復歸 事後指導 및 豫防에 따른 再活的 配慮는 基本法이 制定되기 前에 未恰한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再活의 全過程을 體系的으로 規定해 좋은 心身障礙者 福祉基本法이 制定되어야 職業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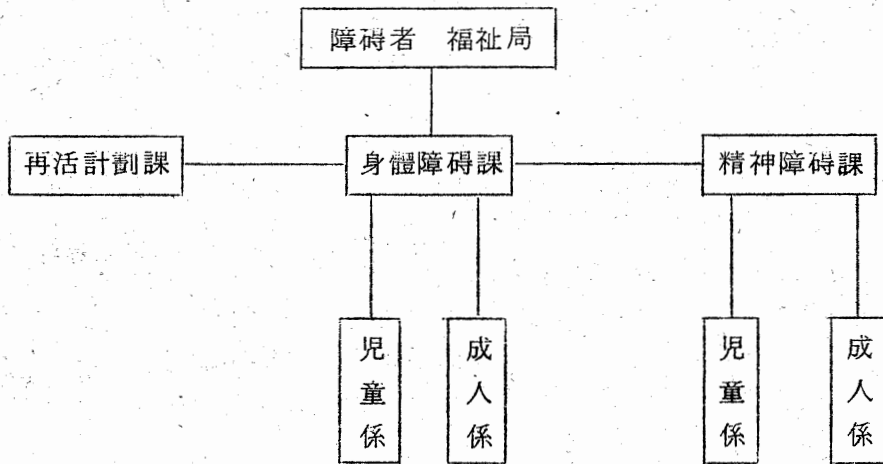
活을 원활히 實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障礙者福祉 專門行政部署의 設置가 要求된다. 흔히 再活 專門家들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再活事業의 一線部署가 없다고 지적한다. 장애자가 어디 있는지 把握할 수 있는 責任的인 部署가 없고 障礙者편에서는 찾아가 호소할 수 있는 一線(front)이 없다. 그래서 自己집에서 數百里 떨어져 있는 施設로 물어서 찾아가 호소하고 있는 実情이다. 一線機關이 設置되려면 中央에 專担部署가 있어야 한다.

한편, 國家마다 障礙者福祉 行政組織이 달라 兒童은 兒童部署가, 成人은 成人部署가 또는 福祉는 保社部처가, 教育은 文教部가, 勞動은 勞動部처가 취급하고 있는 例가 많으나 心身障礙者의 福祉는 그 서비스의 專門性이 相異하면서도 서로 補完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再活이라는 窮局的인 目的에 達할 수 없으므로 이를 綜合적으로 計劃하고 執行할 單一行政組織이 必要하다.

따라서 保健社会部內에 心身障礙者福祉局이 있어 障礙者의 医療, 教育, 職業訓練 및 生計訓練 및 生計保護를 專門的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다면 理想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特殊教育은 文教部 內에서 特殊教育課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日本의 社会福祉關係組織을 보면, 厚生省社会局에 更生課가 있고 児童家庭局에 障害福祉課가 있으며, 審議會로서 身體障害者福祉審議會가 있고 정신박약아 福祉審議會가 있고 国立施設로 国立東京 視力障害센터, 国立精戸視力障害센터, 国立函館視力센터, 国立福祉 視力障害센터 등이 있다. 또한 国立身體障害센터에는 身體障害者 更生指導所를 두고 国立聴力言語障害센터에 国立농아者 更生指導所가 있고 国立伊東 및 別府重度障害센터가 国立保養所로서 設置되어 있다.

都道府縣에 보면 民生主管部局에 身體障害者更生相談所가 指定都市는 任意로 設置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신박약아更生相談所가 있다.

美国의 경우 정부기구 組織上 国民의 福祉問題를 일사불란하게 다루기 위해 保健 教育 福祉 (HEW)를 하나로 묶어 한 長官

手權下에 保健局, 教育局, 福祉局을 두어 從的橫的으로 상호 連絡이 되게 하여 福祉對策樹立 및 行政處理에 重複性이나 차질이 없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도 障礙者 福祉部長官이 있어 障礙者福祉問題만 전담하는 行政機能組織을 위한 研究가 英美國의 標本을 거울삼아 各國에서 行하여지고 있다 한다.

美國에는 大統領직무실내에 障礙者福祉議會를 두어 障礙者 再活問題에 따른 조사 (Survey), 예방 (Prevention) 對策樹立 등의 자문을 大統領이 專門委員들로 부터 直接 받고 있으며 이 Presidential Committee가 美國 障礙者福祉制度 樹立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다시 日本의 制度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日本에 있어서 障礙者對策은 원래 상이군인 援護對策等 特等指定한 사람들을 對象으로 해 왔으나 소와 24年 (1919年) 身體障礙者福祉法의 制定을 계기로 身體가 不自由한 사람들全體에 대한 福祉施設로서의 位置를 하고 그後 每年 制度를 整備해서 그 充實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1970.5에는 心身障礙者對策基準法이 制定되고 또한 8월에는 身體障礙福祉審議會에서 身體障礙者 福祉對策의 方向에 대해서 答申이 있는등 身體障礙者福祉對策의 充實이 크게 要請되고 있다. 身體障礙者對策을 한말로 말하고 있으나 그 內容은 身體의 機能을 廻復하는 訓練 職業訓練等 社會福祉를 위한 諸般 訓練外에 生活의 安定 障礙에 따른 教育等 그 分野는 各省에 關聯되고 있다.

各府省이 行하고 있는 主要한 障礙者福祉行政

府省名	分 野	内 容
總理府 大藏省	總括調整 稅의 減免	中央心身障礙者對策協議會 所得稅：所得控除 物品稅：하지 등 機能障害者가 使用하는 自 動車等 法人稅：身體障礙者 授產事業 關稅：身體障礙者用으로 特別히 製作된 器具等
文教部 厚生省	特殊教育 福祉一般 年金手當等	學校，농學校，養護學校 身體障礙者福祉，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의 援護等 厚生年金保險，船員保險，國民年金特別兒童扶養 手當等
運輸省 郵便省 勞動省	運賃割引 料金減免 雇傭對策	日本國有鐵道 私鐵 버스等의 運賃割引 라디오 受信料의 減免 집 자郵便物等의 無料取扱 身體障礙者雇傭促進，身體障礙者의 職業訓練
	勞動災官	勞動災害補償保險
建設省	公營住宅	身體障礙者用 公營住宅 住民稅 所得控除

府省名	分 野	内 容
自治省	税減免	事業税 - 重度의 障礙者가 行하는 안마침等 医療에 속하는 事業 自動車税 - 輕自動車税 및 自動車取得税

日本の 身體障礙者福祉法은 身體가 不自由한 사람들의 更生을 援助하고 그 更生에 必要한 保護를 行하여 그 生活의 安定을 도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本人의 努力은 勿論 國家 地方 公共團體國民이 다같이 그 更生(再活)을 위하여 努力할 義務를 定하고 있다.

①: 福祉事業所

身體가 不自由한 사람들로 부터 各種 相談에 應한다든지 便宜를 提供하는 일은 福祉事業所와 市役所 町村事業所에서 行하고 있다. 福祉事務所에는 身體障害者福祉司라는 身體가 不自由한 사람들을 担当하는 專門知識을 가진 職員이 있어서 專門的 相談에 應하고 必要한 指導를 行한다.

例를 들면 医療를 받고져 할때 年金과 税金의 問題 기타 日常生活과 職業上의 일로 困難을 받고 있을때 언제나 相談할 수 있게 되어있다.

② 身體障害者 更生相談所

身體가 不自由한 사람들을 위한 更生方法은 障害의 種類와

程度, 年金, 性別等の 勿論 現在 또는 장애의 職業分野 本人의 能力과 希望 주어진 環境等を 十分 觀察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專門的인 立場에서 決定하여야 한다.

이러한 科学的 決定을 行하는 專門機關으로서 各郡道府縣에 設置되어 있는 것이 身體障害者更生相談所이다. 여기에는 医療 心理 判定員 職務判定員 등이 專門職員과 各種 検査 設備等이 配置되어 있어서 항상 福祉事務所와 連絡을 취하면서 身體不自由한 사람들 個個人이 가장 効果的으로 更生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判定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業務는 순회하면서 相談을 통하여 行할 수도 있다.

③ 身體障礙者 相談員

身體障害者の 更生援護의 相談에 応하며 必要한 指導를 행함과 同時に 福祉事務所等 관계기관의 業務에 대한 努力과 地域活動의 中核이 되어 援護思想의 普及에 努力하고 있다. 相談員은 1973年 現在 7,000 여명이 있었고 그 대부분이 身體障害者로서 地域社会의 信賴를 얻고 活動을 하고 있다.

各種 措置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① 更生援護 措置

援護의 種類

- 診査, 更生相談
- 更生医療의 給付修理

② 更生援設施設의 入所等

施設의 種類

- 肢體不自由者 更生시설
- 失明者 更生시설
- 聋아자 更生시설
- 内部障害者 更生施設
- 身體障害者 療設施設
- 身體障害者 援設施設
- 身體障害者 福祉工場
- 点字도서관
- 盲人홈
- 更生訓練費의 支給
- 自勸車조작 訓練事業

③ 身體障害者の 社会的 自立이 可能な 限 元활하게 되도록

몇가지 措置가 取해지고 있다.

- 壳店의 設置
- 煙草小壳人の 指定
- 身體障害者の 製作品 暗買(重度障害者 对策)

④ 其他 身體障害者 福祉施策

- 日常生活用具의 給付 및 貸与
- 進行性 근육축 증자의 援設

- 家庭奉仕員의 派遣
- 居宅重度障害者 訪問診査

⑤ 盲人对策

- 点字도서, 声図書の 대출의택
- 盲人用具의 販売斡旋
- 盲人電話 교환수의 양성
- 盲人步行 訓練指導員의 養成

⑥ 地域活動 对策

- 地域活動의 育成
- 身體障害者 스포츠大会
- 点訳奉仕員 養成制度
- 社会適応 訓練制度 等

셋째, 心身障碍者 福祉審議委員會가 構成되어야 한다.

心身障碍者 福祉는 關係部処間の 業務調整이 不可避하고 總體的인 福祉計劃과 執行을 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調整機能과 計劃執行 機能을 諮問할 수 있는 審議委員會를 構成, 이를 國務總理 直屬으로 두는 것이 必要하다. 이 委員會에는 医療界, 教育界, 實業界, 社会事業界 等이 모두 参与해서 構成되어야 한다.

넷째, 再活要員, 專門人力의 養成이 必要하다. 再活相談家,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補助器製作技士, 言語治療士, 特殊教師等 專門人力을 排出할 수 있는 養成機關이 扩充되고 養成된 要員들의 報

酬가 一般社会의 報酬水準에 이를 수 있도록 心身障礙者 福祉施設에 對한 人件費 補助를 政府가 積極的으로 扩充해야 하고 要員들이 일할 수 있는 施設과 기관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1979年 1월 1일 부터 실시된 特殊教育 振興法을 한마디로 障礙兒童에게 教育의 權利가 부여되는 基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文敎部에서는 50 億원이나 예산을 投入하여 우선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일부터 규모있게 使用할 계획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本法施行에 따라 障礙兒 教育이 의무화됨에 있어 障礙兒童을 養育하고 教育시킬 要員需給計劃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特殊教育学科가 설치된 大學은 3개 대학 分으로 그나마 대부분이 초등보다는 中等敎師 資格証을 받아 一線에 배출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 一般敎師 보다는 特殊敎師를 훨씬 더 우대하며 敎師養成 過程에서 부터 一般敎師 보다 더 많은 學點을 叩야만 特殊敎師가 될 수 있게 제도화 하고 있다. 要員養成은 特殊敎師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의료분야, 心理分野, 社会事業, 物理治療, 言語治療, 行動修正 등 各分野의 專門性을 띤 要員을 말하는 것이며, 障礙 程度에 따라 個別的 指導를 해야하는 問題가 있다. 美國의 경우 專門要員은 大學院 課程을 이수한 사람으로 그 資格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施設의 專門化가 必要하다.

現在 心身障礙者 福祉施設을 分析 檢討하고 그 地域社會의 欲求에 맞도록 施設의 機能을 調程하면서 施設 설비나 人力構成을 專門化 시킴으로서 再活施設로서 機能이 充分히 發揮될 수 있어야 한다. 医療再活施設, 職業再活施設, 收容保護施設 또는 綜合再活施設等 각기의 專門機能이 充分하게 考慮되어서 施設이 운영될 수 있도록 政府의 支援策이 積極的으로 있어야 한다.

여섯째로, 心身障礙者 相談이 強化되어야 한다.

障礙者가 發生되었을때 이들의 福祉를 相談할 要員을 확보해야 한다. 各 郡單位로 再活相談 要員을 保健所等에 配置하여 障礙者의 発見, 登錄接授부터 事後 指導까지 일련의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障礙者 file이나 card를 비치하는 것도 必要하다고 본다. 또는 現在 各 市道에 配置되어 있는 兒童 相談 要員을 教育訓練시켜 活用하는 方案도 考慮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障礙者에 對한 社會的 態度는 短時日內에 달라질 수 없으므로, 障礙者에 對한 편견이나 불이해가 해소되기까지는 꾸준한 社會啓蒙 活動이 必要하다. 各 言論機關은 意識的으로 障礙者에 對한 社會的 態度를 소화시키는데 最善의 時間과 紙面을 할애해야 한다. 또한 이에 對한 政府의 積極적인 政策的 배려와 支援이 必要하고 福祉機關들은 勿論 障礙者 自身들이 障礙者들의 成功美談이나 기타의 建設的인 체험기를 보다 많은 國民들에게 알릴 必要

가 있다.

또한 心身障礙者 福祉서비스는 機關相互間 協議에 依해 調整되
나가지 않으면 豫算의 낭비와 서비스 제공의 重複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施設間의 機能을 調整하려면 各機關이 參與된 民間
協力機構가 必要하다. 이것은 地域社会 組織의 原理에서도 主張될
수 있는 문제다. 政府는 이러한 民間協議 기구를 政策的으로 支
援해서 이 協議機構를 通해서 心身障礙者 福祉事業에 對한 政策建
議나 기타의 자문을 받아들여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고 自然스런
行政의 卞결이라 하겠다.

第Ⅶ章 結 論 及 建 議

[illegible]

第Ⅶ章 結論 및 建議

結 論 (要約)

1. 心身障礙는 크게 身體障礙와 精神障礙로 区分된다.

2. 身體障礙는 보통 視覺障礙, 聽覺障礙, 肢體障礙, 言語障礙 등으로 日課를 수행해 나가는데 뚜렷한 障礙를 가진 상태를 말하며, 肢體障礙는 切斷·麻痺, 形等을 포함하고, 視覺障礙는 全盲準盲, 弱視等を 聽覺障礙는 難聽等を 言語障礙는 병어리 및 말더듬이等を 포함한다.

3. 精神障礙는 精神病, 精神薄弱 및 精神病質등 精神的 결함으로 保護나 기타 조치를 要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이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治療가 곤란한 것이 精神薄弱으로서 障礙性(disability)을 지니고 있다. 이는 知的水準의 低下狀態를 말하며, 先天性, 早期後天性, 氣質性 등이 있다.

또한 知能의 程度에 따라 백치, 치우, 魯鈍으로 区分하여 백치는 言語 理解나 意思交換이 不可能한 狀態, 치우는 知能年令이 6~7歲에 未達하는 狀態, 魯鈍은 知能年令이 10~12歲 程度이다.

5. 障礙者の 出現率은 各國의 事情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障礙者를 은닉하려는 一般의 부정적 심리때문에 實態調査結果가 신통치 않고 1960. 1966 年에 정부가 調査한 結果는 1960. 年에 人口 1,000 名에 對하여 6.6 名, 1966 年에는

3.8 명을 발견한 정도이나 세계 추세로 보아 너무 낮은률을 보이고 있다.

6. 1966 年 調査에서 나타난 障礙別 出現을 보면 肢体不自由가 전체의 46.5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聾啞 18.5 %, 視覺障礙 12 %, 精神障礙 6 % 정도이다. 1966 年 結果로는 肢体不自由者가 48.6 %, 盲者 14.6 %, 聾啞 14.5 %等이고 障礙의 原因을 보면 先天的 26.4 %, 發病後 40.3 %, 戰爭 7.5 %, 事故 12.7 %, 其他 13.0 %이다.

7. 1972 慈行會에서 實施한 精神薄弱兒 實態調査에 依하면 I.Q 60 以下가 人口의 0.5 %를 점하고 있다. 또한 慈行會에서 最近調査한 身體障礙兒童出現率은 總人口의 1.38 %를 나타내고 있다.

8. 日本의 경우는 1,000 名당 17.89 명의 身體障礙者가 出現되고 정신박약의 경우 1,000 명당 4.9 명이 出現되어 總 2.28 %의 出現을 보이고 있다.

9. 이상의 추세를 감안할때 우리나라엔 전체인구의 약 3 %선의 장애인 인구가 있으리라 추산되며 총수로 100 万程度된다고 보여진다.

10. 우리나라 憲法 30 條는 모든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하고 있으며, 特히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基本法에 의하여

生活能力이 없는 心身 障礙者의 경우 生活保護法의 보호대상이 되고 心身障礙兒의 경우는 兒童福利法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國家財政의 限界性 때문에 또한 障礙者對策基本法의 不在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國家의 努力은 다소 미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11. 障礙者 福祉對策의 基本的인 조건은 法的 制度的 정비와 行政的 財政的 支援인데, 우리의 경우 憲法, 教育法 兒童福利法等의 一部 條項 외에는 구체적인 法的보장이 전혀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障礙者의 福祉와 教育의 全般的 發展을 爲해 「障礙者 福祉基本法」을 비롯 관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障礙者를 爲한 社會的對策으로는 이들에 대한 父母와 一般 社會人의 意識구조의 變化가 이들의 社會복귀에 重要한 요인이 된다. 단순한 수용보다 형태의 慈善對象으로 취급할것이 아니라 人間 平等理念에 입각한 兒童觀과 能力 開發이라는 面에서 積極적인 태도로 發達되어야 한다.

13. 우리나라의 障礙者를 爲한 福祉施設은 1977年末로 66個所에 9,700여명이 收容되고 있고 이를 成人이 31個所에 5,800여명, 兒童이 43個所에 3,800여명이 수용될수 있게 되어 있다. 1979年 現在는 障礙兒童의 施設保護는 總 52個所에 4,455名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肢體不自由兒가 15個施設에 1,562名, 精神 薄弱兒가 19개시설에 1,768名, 育兒가 8個 施設에 464名,

障 碍 児 가 10 個 施 設 에 661 名 이 다 . 1979 년 성 인 장 애 자 는 31 개 시 설 에 6,300 여 명 이 다 .

14 . 収 容 者 들 에 게 對 한 對 策 은 兒 童 施 設 의 경 우 는 營 養 給 食 으 로 牛 乳 80 ㄱ 썩 을 먹 이 고 , 糧 穀 을 570 ㄱ (4 合) 으 로 조 정 하 고 從 事 員 에 對 한 대 우 를 개 선 하 는 등 상 당 한 努 力 을 보 이 고 있 으 나 成 人 施 設 의 경 우 는 兒 童 施 設 만 큼 못 되 고 아 지 미 흡 한 보 조 를 할 뿐 이 다 .

15 . 障 碍 者 에 關 한 教 育 的 對 策 은 종 래 의 保 護 위 주 에서 訓 練 教 育 의 方 向 으 로 적 극 적 福 祉 對 策 을 강 조 하 고 있 는 것 이 오 늘 날 世 界 的 인 추 세 다 . 따 라 서 特 殊 學 校 , 特 殊 學 級 및 적 절 한 教 育 施 設 을 확 충 하 고 特 殊 教 師 의 養 成 과 資 質 向 上 그 리 고 전 문 요 원 의 확 보 가 시 急 하 다 . 우 리 나 라 에 서 는 特 殊 教 育 을 받 고 있 는 學 生 의 百 分 率 은 全 體 學 校 人 口 의 0.12 % 로 서 다 른 나 라 에 비 해 상 당 히 낮 은 편 이 다 .

16 . 우 리 나 라 特 殊 教 育 은 1960 년 대 에 들 어 서 서 비 로 소 발 전 궤 도 에 올 라 서 게 되 었 다 고 할 수 있 다 . 1960 년 도 까 지 9 개 밖 에 없 던 特 殊 學 校 가 그 후 1969 년 도 사 이 에 28 개 로 늘 어 났 고 등 록 된 學 生 數 도 약 4,000 名 으 로 늘 어 났 다 . 1971 년 에 는 教 育 可 能 精 神 薄 弱 兒 와 學 習 不 進 兒 를 為 한 特 殊 學 級 이 運 營 되 고 1967 년 에 盲 學 校 및 學 校 教 育 課 程 이 文 教 部 令 으 로 공 포 되 었 다 .

1979 년 부 터 特 殊 教 育 振 興 法 이 시 행 된 다 .

17 . 障 碍 者 의 職 業 再 活 과 社 會 復 歸 는 障 碍 者 福 祉 對 策 의 目 標 이 므 로 체 계 적 인 프 로 그 램 과 障 害 者 에 맞 는 職 種 의 開 發 과 就 業 알 선 등 의

1. 對策이 要請된다. 現在 우리나라의 障礙者를 爲한 職業再政策은 미약하다. 상이군경이나 産業再活院에서 一部가 시행되고 있지만 一般 障害者를 爲해서는 綜合再活院 一部와 仁川所在 성린아동직업재활원이 있을 뿐이다. 日本의 경우 身體障礙者를 爲한 國立 職業再活院이 11 개소가 있고 職業訓練을 받는 障礙者들에게 教育費, 衣食費, 交通費等 一切의 費用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촉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18. 醫療對策中 가장 어려운 分野가 예방대책이다. 이를 위한 醫學的研究는 물론 社會的 對策이 따라야 하며 特히 妊産婦의 安全을 爲한 母子保健이 強化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장애의 早期発見과 治療에 對한 知識도 널리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醫療再活施設은 갖추고 있는 綜合病院도 몇개 없고 物理治療士 및 作業治療工 養成所도 몇개 없되어 初大課程에서 할뿐이다. 그러므로 第三醫學이라고 불리어지는 再活醫療事業을 격려하고 社會계몽을 통한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19. 障礙者 福祉事業基本法은 中央官署와 地方公共團體의 共同責任으로 再活事業을 遂行할수 있는 行政體系에 留意하면서 職業訓練 雇傭促進, 發達保障, 育成醫療과 再活醫療, 文化的인 生活保護, 그리고 特殊教育의 擴大와 發生豫防 및 突惡把握에 對한 國家의 責任을 明示해야 한다.

20. 障礙者福祉를 전담한 부서로서는 障礙者福祉局을 두고 精神障

障課와 身体障課를 두고 地方에도 전담系를 区庁단위로 두며 專門要員을 保健所 또는 兒童相談所에 配置하여 이들을 상담하고 家庭과 職場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1. 障者가 發生되면 이들을 등록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22. 등록된 장애자는 이들의 의학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問題가 어느정도이며,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줘야할지 평가해야한다. 미국재활법에 의하면 신체장애자일 경우 평가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다.

23. 장애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비용부담은 보다 신축성있게 조정하여 정부와 社會가 一部 또는 全部를 부담해야된다. 가정경제로서는 곤란하다.

24. 障者들의 社會化경, 즉 物理的 환경 그들에 대한 社會的 態度, 社會的 諸制度等을 순화시켜야 한다. 건축이나 도로 및 交通 便宜等 각가지면에 特別을 배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障者事業은 立法措置의 未備로 아직 施設收容保護에 그치고 있으니 앞으로 本格的인 對策이 서야될것이다. 또한 1981年은 UN이 國際障者再活의 해로 정했으니 이번 계기를 잘 利用하여 障者事業의 發展을 모색하고 基盤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建 議

1. 1981年은 UN이 定한 "국제장애자의 해"인만큼 이를 계기로 心身障礙者福祉에 關한 一般의 관심고취는 勿論 障礙者 福祉 政策에 關한 政府의 行動計劃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2. 世界의 추세나 그간의 調查結果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約 百萬名의 障礙者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障礙者福祉의 基本이되는 障礙者福祉對策 基本法을 먼저 制定해야 겠습니다.

3. 障礙者福祉 基本法 制定과 아울러 保健社會部 內에 障礙者福祉局을 設置하고 身體障礙者 福祉課와 精神障礙者 福祉課를 設치해야겠습니다.

4. 障礙者들의 出現을 파악하고 그들을 편리하게 接促하기 爲하여 障礙者登錄制를 實施해야겠습니다.

5. 障礙者들을 相談하고 判別하기 爲하여 障礙者專門要員을 養成하여 各保健所에 配置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6. 國立障礙者綜合再活施設을 各地方에 하나씩 設置 運營해야겠습니다. 즉 畿湖지역, 충청지역, 호남, 영남, 영동으로 나누어 全國에 5個所정도는 있어야겠습니다.

7. 障礙者施設에 對한 支援이 아직도 미흡하므로 現在보다 改善되어야하고 特히 施設長의 人件費를 보조하여 施設長들이 其他運營費를 써버리게되는 근원을 제거하고 施設長들의 資質을 높이기 爲해 相當한 교육이나 訓練을 의무적으로 이수케해야겠습니다.

8. 障碍者の 就業斡旋이나 訓練等は 障碍者 고용촉진법이나 기타 수의계약체결등에서의 特惠가 따라야 제대로 実施될수 있으니, 現在 국립원호처 직업재활원과 같은 체제로 兗展시켜야 하겠읍니다.

9. 障碍者の 医療再活을 專門化하기 爲하여 保健專門學校나 간호 대학에 再活關係 課程을 마련하여 作業治療士나 物理治療士, 언어교정사, 기타 의수족 및 보장구제작기사를 養成하도록 권장해야겠읍니다.

10. 社会福祉研修院에 障碍者再活要員 養成班을 두어 訓練養成에 보다 노력해야겠읍니다.

11. 施設에 대한 支援은 兒童이나 成人에게 큰차이가 없도록 조정해야겠읍니다.

12. 国立覺心院은 現代의인 施設로 増策해야하고 特殊教育課程을 두어 保護와 教育訓練이 綜合的으로 이루어지고 可能하면 職業訓練 施設까지 갖추어져 정박자의 綜合再活施設 및 學校로 승격되어야겠읍니다.

13. 再活要員을 養成하기 爲하여 먼저 資源要員 (Resource Person)을 日本이나 英國等에 파견하여 先進技術을 익히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国内要員을 養成케함이 可하다고 사료됩니다.

14. 1981年 “障碍者の 해”事業과 障碍者福祉对策基本法の 案을 作成하기 爲하여 保健社会部 社会局內에 作業班 (Task Force Team)을 設置하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協助를 소치하여 국위선양의 기회로 삼아야 겠읍니다. 또한 1981年度 事業을 爲한 特別豫算을 편성하여 자료수집, 海外會議参加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읍니다.

15. 兒童障礙者調査가 1979年 兒童課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나, 1981년에는 成人障礙者調査를 실시하여 資料에 미비점이 없도록 강구해야겠습니다.

16. 保社部 社会課에는 障礙者問題 전담 要員을 2名정도 配置하여 지금부터 1981年 事業을 準備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7. 事業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U.N이나 先進国에서 再活專門家를 자문관으로 초청하여 國內의 전문요원과 함께 國際問題, 通信, 立法 資料收集, 시행규칙 작성에 자문을 받는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18. 우선순위로 보아 老人福祉法 보다는 障礙者福祉法을 먼저 제정해야겠습니다.

19. 1980년에는 障礙者福祉 중점검을 실시하여 長期計劃의 기초로 삼아야겠습니다.

참고문헌

1. 金承国外 3人共著, 特殊兒童教育, 白鹿出版社 1978.
2. 俄山社会福祉事業財団 韓國의 社会福祉 1979.
3. 社会福祉総覽, 韓國社会福祉協議会, 1977.
4. 再活심포지움報告書, 韓國身體障礙者再活協會, 1975.
5. 身體障礙者再活세미나 報告書, 연세의료원부속재활원, 1975.
6. 家庭福祉基礎資料調査研究報告書, 保社部 1973.
7. 再活심포지움, 韓國身體障礙者再活協會, 1977.
8. 身體障礙者 職業再活座談會報告書, 성진아동직업재활원 1974.

9. 趙聖模 精神薄弱兒再活問題研究, 韓國社会福祉協議會 1978.
10. 精神薄弱兒 實態調查報告 사단법인자행회 1972.
11. 신체장애자 실태조사보고 1973.
12. 지능발달이 늦은 아동자행회 1977.
13. 남시, 지체장애 아동에 관한연구 성세재활원 1974.
14. 제 1 회 신체장애자 재활세미나보고서 연세의료원 1971.
15. 정신박약의 가정환경조사연구, 국립각심학원 1978.
16. 장애아동조사보고서 보사부 1961.
17. 장애자조사보고서 보사부 1965.
18. 이방자, 자행회보, 자행회 1979.
19. 민은식 장애자재활의현황 및 대책, 사회사업가협회, 1979.